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7)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증권거래세 면제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7)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23. 9.



2023.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7)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23.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3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 등을 비롯한 기업조직재편 및 부실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본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①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 양도의 경우
 - ②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④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경우

- 본 연구는 위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타당성 분석)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수·합병 활동은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자본의 증가 및 보다 효율적인 고용주-근로자 매칭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분할과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들 에서도 대체로 효율성 및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연구들에서는 기업 분할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제도 목적 및 대상의 적절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경우 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 ①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 양도 ②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 ③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④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
 - 기업 구조조정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장기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존재
 - 지주회사 전환 금융기관의 경우 별도의 법령*에서 구조조정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 면제가 이들 법령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음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 국내증권형 ETF의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거래 또한 괴리율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 기업 분할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의 여지는 있음
- 국내에서는 기업 분할이 기업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구조조정일 가능성도 존재함
 -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개별 기업 분할의 성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그 주체로 조세당국이 적절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 (조세특례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기업 구조조정 활동에 대한 과세감면은 기타 관련 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의 변화에 맞춰 상호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 「법인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 거래비용 감소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효율성 추구라는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따라서 제도가 중복된다고 하기는 어려움
- (효과성 분석) 효과성 분석의 방법론으로는 크게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실증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질적 분석의 두 가지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음

- 실증분석은 실제 기업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활동에 「조세특례제한법」이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임
 - 질적 분석은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동 조항의 효과성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접근법임
-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건이 만족될 필요가 있으나, 본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 조건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평가대상 정책에 대한 통상적인 설문조사 방식 역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기업의 구조조정과 동법의 관련성에 대한 실무적, 학문적 이해가 필요하나, 표집 대상 모집단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표본 수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이를 고려하여 본 평가는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효과성 분석을 진행함
- 전문가 인터뷰는 실무자 4명, 학계 4명으로 총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심층평가의 대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실무·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정하여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음
 - 학계는 표적집단심층면접(FGI), 실무자는 심층면접(iDi) 형식으로 인터뷰 진행함
- 인터뷰는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
- 제도 관련 현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재확인
 -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의견을 묻고,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14호를 중심으로 동 조항의 효과성 및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들인 제16, 23, 24호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청취 후 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심층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구조조정에 미친 영향은 작은 편이나, 기업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기업의 자본조달 상황, 구조조정으로 인한 향후 수익성 문제 등이 구조조정 행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됨
 -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인 세부담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절대적인 크기는 양도세 등 타 세목에 비해 작더라도 증권거래세 부담도 비용에 포함됨
 - 증권거래세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 예를 들면 금융업, 대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대체로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동법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제14호의 경우 학계 4명, 실무자 4명 모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조세지출에 비해 바람직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 후생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제16호는 학계 2명, 실무자 4명, 제23호는 학계 2명, 실무자 2명, 제24호는 학계 2명, 실무자 4명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제23호의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고려하여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실무자들의 의견이 존재하였음
-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법의 정비, 적격 합병 요건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법인세법」 등 법 간의 정합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적격’ 요건의 정의를 변화된 경제상황과 기업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심층평가의 평가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각항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구조조정 활동의 목적인 기업의 장기적 효율성을 제고를 통한 경제효율성 개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기업 분할을 통한 지배권 강화와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상법」·「자본시장법」·「법인세법」 등 법 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

목 차

I. 서론	13
II. 제도 운영 현황 및 국제비교	19
1. 현행 면제제도 운영 현황	21
가. 제도 개요 및 도입목적	21
나. 제도 연혁	22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연간 조세지출 규모	31
2. 주요국과의 비교	34
가. 주요국의 증권거래세	34
나. 해외 M&A 관련 세액공제 제도	45
III. 타당성 분석	49
1.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51
2. 선행연구 검토	56
가. 기업 인수·합병 관련	56
나. 기업 분할 관련	57
3. 관련 제도 현황 및 변화	59
가. 증권거래세 변화	59
나. 「조세특례제한법」 변화	60
다. 국내·외 주주이익 보호 관련 법체계 현황 및 변화	60
4. 정책 목적 및 대상 설정의 타당성	62
5. 정책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65
6. 다른 구조조정 지원제도와와의 중복성	69
7. 정리 및 제언	70

IV. 효과성 분석	73
1. 효과성 분석 개요	75
가.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접근	75
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청자료 현황	76
다. 실증분석 여건 검토	84
라. 소결	86
2. 전문가 인터뷰 개요	86
가. 인터뷰 대상 선정	86
나. 인터뷰 문항	88
3. 학계 인터뷰 결과	88
가.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 요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	88
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에 대한 견해	92
다.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3, 24호에 대한 견해	94
라.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99
4. 실무자 인터뷰 결과	101
가.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 요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	101
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에 대한 견해	108
다.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3, 24호에 대한 견해	110
라.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116
5. 효과성 분석 소결	118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1
참고문헌	128
부록	133

표 목 차

<표 I-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15
<표 II-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각호의 도입시기 및 일몰기한	28
<표 II-2>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 내역	31
<표 II-3>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및 증권거래세 규모	32
<표 II-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항목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22년 ..	33
<표 II-5> 싱가포르 M&A 비용 공제율과 인수대금	46
<표 III-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내 주요 검토 내용	52
<표 III-2>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및 증권거래세 규모	53
<표 IV-1> 비과세면제사유별 신청자료 건수 분포	77
<표 IV-2> 비과세면제사유별 면제세액 분포	78
<표 IV-3>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해당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현황	80
<표 IV-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해당 증권시장별 거래세 면제 현황	85
<표 IV-5> 증권거래세율 변화	85
<표 IV-6> 학계 전문가	87
<표 IV-7> 실무 전문가	87
<표 IV-8> 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 요인 관련 인터뷰 내용	89
<표 IV-9>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	89
<표 IV-10> 향후 구조조정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91
<표 IV-11>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 관련 인터뷰 내용	93
<표 IV-12>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3, 24호, 기타 관련 인터뷰 내용 ..	96
<표 IV-13>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관련 인터뷰 내용 ..	100

<표 IV-14> 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 요인 관련 인터뷰 내용	102
<표 IV-15>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	104
<표 IV-16> 향후 구조조정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106
<표 IV-17>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 관련 인터뷰 내용	108
<표 IV-18>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3, 24호, 기타 관련 인터뷰 내용 ..	112
<표 IV-19>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관련 인터뷰	117

그림 목 차

[그림 II-1]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 규모	31
[그림 II-2]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및 증권거래세 규모	32
[그림 III-1] 기업의 인적·물적 분할	55
[그림 IV-1] 비과세면제사유별 신청자료 건수 분포	78
[그림 IV-2] 비과세면제사유별 면제세액 분포	79
[그림 IV-3]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연도별 면제신청 현황	81
[그림 IV-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81
[그림 IV-5]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 24, 9호 연도별 면제신청 현황 ...	82
[그림 IV-6]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82
[그림 IV-7]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연도별 면제신청 현황	83
[그림 IV-8]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4, 9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83
[그림 IV-9]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84

I. 서론



I. 서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 등을 비롯한 기업조직재편 및 부실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본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표 I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구분	내용
①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 양도의 경우	-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과 적격 합병 및 분할, 「조특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주식의 교환 및 이전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 선제적 사업재편기업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4호
②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19호, 제19호의2, 제19호의3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기업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
④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경우	-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 및 교환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양도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2호

자료: 김학수·성승제·김준식,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본 연구는 위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통상 전체 증권거래세 규모의 1% 이하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통상 연 100억 이상에서 최대 1,600억원까지 발생하여 작은 액수라고 할 수 없음

- 동 제도로 인한 감면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제14호¹⁾에 따른 현물출자, 합병 및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수특례에 의한 양도에서 유발된 증권거래세 감면이 가장 많았음
 -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는 연평균 281억원으로 연도별 평균 86.2%를 차지함
 - 2012, 2014, 2015, 2021, 2022년 증권거래세 감면액의 90% 이상이 해당 조항에 의해 발생함

- 다음으로 감면규모 비중이 큰 조항은 2010년 신설된 제21호²⁾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추정지수의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양도에서 유발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21호에 의한 증권거래세 감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는 연평균 25억원으로 연도별 평균 15.1% 비중을 차지함
 - 2020년 감면 비중이 30.6%로 가장 많았으나 2021년 5.5%, 2022년 1.1%로 감소하였으며, 감면액 규모로는 2018년 48억원으로 가장 많음

- 본 연구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과 법률적·경제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
 - (지원 목적의 적절성) 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지원대상의 적절성) 구조조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식이 적절할지 검토함
 - (지원 내용과 방식의 적절성) 증권거래세 면제를 취하는 대상과 방식이 적절한지 각호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함
 - 타 제도와의 중복성 및 유사성에 대한 검토 역시 수행함

1)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또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 산입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효과성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주안점은 구조조정 활동에 수반되는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실제 기업의 구조조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임
- 효과성 분석의 방법론으로는 크게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실증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질적 분석의 두 가지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음
 - 분석 여건을 고려하여 상기 방법론 중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효과성 분석을 진행함
 - 전문가 인터뷰는 실무자 4명, 학계 4명으로 총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심층평가의 대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실무·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정하여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음
 - 학계는 표적집단심층면접(FGI), 실무자는 심층면접(iDi) 형식으로 인터뷰 진행함
- 인터뷰는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
 - 제도 관련 현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재확인
 -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의견을 묻고,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14호를 중심으로 동 조항의 효과성 및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들인 제16, 23, 24호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청취 후 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논의 과정을 통하여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더욱 효과적인 제도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평가 대상 제도의 타당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제도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행하고자 함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국제비교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국제비교

1. 현행 면제제도 운영 현황

가. 제도 개요 및 도입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 등을 비롯한 기업조직재편 및 부실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부실금융기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부실농협·수협·산림조합)의 보유주권을 적기 시정조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 ②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제7의2호·제7의3호)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등이 부실우려조합 주권 또는 지분을 양수 후 양도하는 경우
 - ③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제9호)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④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현물출자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 산입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⑤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 ⑥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9호·제19의2호·제19의3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⑦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 구성

종목 반영을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⑧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2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서 현물출자 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 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및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⑩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4호)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⑤, ⑨, ⑩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외의 조항은 일몰 없음

□ 본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표 I-1> 참조)

나. 제도 연혁³⁾

□ 증권거래세 면세규정은 1996년 12월 30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의2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규정됨

□ 1999. 8. 31. 법 개정 시 부도중소기업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를 추가함

- (법 제1항 제15호 신설)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용인 등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원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함

□ 1999. 12. 28.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증권거래세 면제를 새롭게 규정함

- 기업구조조정조합(Vulture Fund)과 벤처기업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⁴⁾

3)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연혁, 김학수 외(2017)를 참고하여 작성

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 11., p. 7; p. 17.

- (법 제1항 제2호의2·3 신설)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조합(Vulture Fund)에 대하여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 (법 제1항 제2호의3 신설) 또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 2000. 10. 21. 법 개정 시 예금보험공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확대함⁵⁾

- (법 제1항 제8호 가~다목 신설)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 면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임
- (법 제1항 제16호 신설)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5. 12. 31까지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함
- (법 제1항 제17호 신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 12. 31.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기업개선약정체결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2001. 12. 29. 법 개정 시 합병·분할 등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를 확대 적용함

- 이는 국세청 예규로 운용되고 있던 합병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입법화하려는 것임

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0. 7., p. 4.

- 2002. 12. 11. 법 개정에서는 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⁶⁾
 - (법 제1항 제8호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효율적인 부실자산의 정리촉진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법 제1항 제19호 신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농협조합이 기존의 예금보호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예금보호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함

- 2003. 12. 30. 법 개정 시 부실수협이 보유주권을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양도받은 동 주권을 수협 등이 재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법 제1항 제7호의2·19호의2 신설)
 - 이는 부실농협 및 부실수협의 구조조정을 통한 농협·수협의 건전한 발전과 농어민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 부실수협 구조조정에 대하여도 부실농협·부실은행 등의 구조조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세지원함⁷⁾

- 2004. 12. 31. 법 개정 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확대함(법 제1항 제10호 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투자회사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포함함⁸⁾

- 2006. 12. 30. 법 개정 시 구조조정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를 일몰 종료함
 - (일몰종료) 다음의 구조조정 관련 거래의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이 2009. 12. 31. 일몰종료됨
 - (법 제1항 제2호의2 삭제) 기업구조조정조합등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2. 11., p. 25.

7)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2003, pp. 287~288.

8)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2004, p. 294.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법 제1항 제11호 삭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외 기업의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법 제1항 제12호 삭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법 제1항 제17호 삭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약정체결기업의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기구 관련 면세 규정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나 도입 당시에 비해 구조조정 수요가 감소함⁹⁾
- 또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한시법)이 2006년 10월 실효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의 경우 제도 도입 이래 설립된 CRF가 모두 존속기간 만료되어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지원의 실효성이 감소

- 2008. 12. 26. 법 개정 시 부실산림조합 구조조정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추가함
- (법 제117조 제1항 제7호의3·제19호의3 신설) 부실하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산림조합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농협·수협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2009. 5. 21. 법 개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이행 및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함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고 금융부문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
 - (법 제117조 제1항 제13호 신설) 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법 제117조 제1항 제20호 신설)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같은 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 2010. 1. 1. 법 개정에서는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연장하고 새로운 면제대상을 신설하는 등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재정비함

9)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07, p. 590.

- (법 제1항 제14호 개정)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지원하기 위해 합병, 분할, 현물출자 외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법 제1항 제21호 신설) 기업 조직재편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기업조직재편 유형을 추가함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기업조직재편 유형에 추가함(2010. 7. 1. 이후 교환·이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 (일몰연장)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법 제1항 제16호)
- 2013. 1. 1. 법 개정으로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함
- (법 제1항 제22호 신설) 개정안은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주식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¹⁰⁾
 - 국회는 2012년 예산안 심의 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신용사업부문(농협은행·농협보험 등)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을 현물출자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¹¹⁾
 - 또한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협 구조개편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면서 현물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그러나 정부와 관련 기관 간 출자금액·출자주식의 종류 등에 대한 협의가 2012년 10월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1년 세법개정 시 설정하였던 적용기한인 2012년 3월 2일이 경과하였음

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2. 12. 31., pp. 4~5.

11) 이후 국회와 정부 간 협의를 통하여 현물출자 1조원 및 이차보전 방식의 현금지원 4조원으로 수정되었음

- 그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당시 세법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향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출자받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함
 - (일몰연장)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법 제1항 제16호)
- 2014. 12. 23. 법 개정에서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¹²⁾
- (법 제1항 제23호 신설)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이는 부실기업의 회생 및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 (일몰종료)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 2015. 12. 15. 법 개정 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을 연장함
- (일몰연장)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를 2015. 12. 31.에서 2018. 12. 31.까지 연장함
- 2016. 12. 20. 법 개정 시 재무구조 개선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을 연장함¹³⁾
- (일몰연장)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6. 12. 31.에서 2018. 12. 31.로 연장하여 재무구조 개선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
- 2017. 12. 19. 법 개정 시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재무안정 PEF가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대상 확대
- (법 제1항 제23호 개정) 기업재무안정 PEF가 직접 투자·출자한 주식 양도하는

12)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2014, pp. 250~252.

13)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17, pp. 311~314.

경우 외에도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간접 투자·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18. 12. 24. 법 개정 시 실효성이 낮은 증권거래세 감면 항목 정비
 - (법 제1항 제13호 삭제)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소유주식 등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과 교환하는 경우
 - (일몰 연장) 제1항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 2021. 12. 28. 법 개정 시 제1항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표 II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각호의 도입시기 및 일몰기한

구분	내용	적용시기	일몰기한
제1항 제7호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1998. 9. 16.	해당사항 없음
제1항 제7호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2004. 1. 1.	해당사항 없음

〈표 II -1〉의 계속

구분	내용	적용시기	일몰기한
제1항 제7호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2009. 1. 1.	해당사항 없음
제1항 제8호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 9. 16.	해당사항 없음
제1항 제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 9. 16.	해당사항 없음
제1항 제14호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 1. (단,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2010. 7. 1. 이후)	해당사항 없음
제1항 제16호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2000. 10. 21.	2023. 12. 31.

<표 II -1>의 계속

구분	내용	적용시기	일몰기한
제1항 제19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03. 1. 1.	해당사항 없음
제1항 제19호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04. 1. 1.	해당사항 없음
제1항 제19호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09. 1. 1.	해당사항 없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010. 1. 1.	해당사항 없음
제1항 제22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2013. 1. 1.	해당사항 없음
제1항 제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15. 1. 1.	2023. 12. 31.
제1항 제24호	제121조의30 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16. 1. 1.	2023. 12. 31.

자료: 김학수 외(2017), p. 28, <표 II-1>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연간 조세지출 규모

- (조세지출 규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는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위기, 부실저축은행 사태, 코로나19 등 경제위기에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동 제도의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한 해는 2012년으로 약 1,641억원임
 -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 발생으로 예금보호공사(정리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식 등 양도로 인해 2012년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조세지출 규모는 811억원에서 2022~2023년은 220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 -2>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 내역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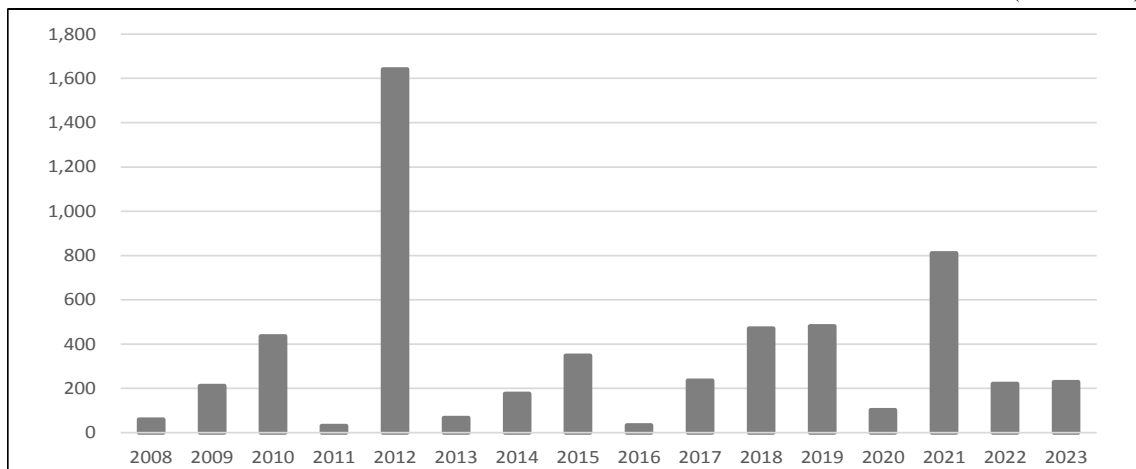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규모	60	211	435	31	1,641	66	176	348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규모	33	235	471	481	102	811	220	228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2008~2009;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0~2022.

[그림 II -1]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2008~2009;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0~2022.

<표 II -3>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및 증권거래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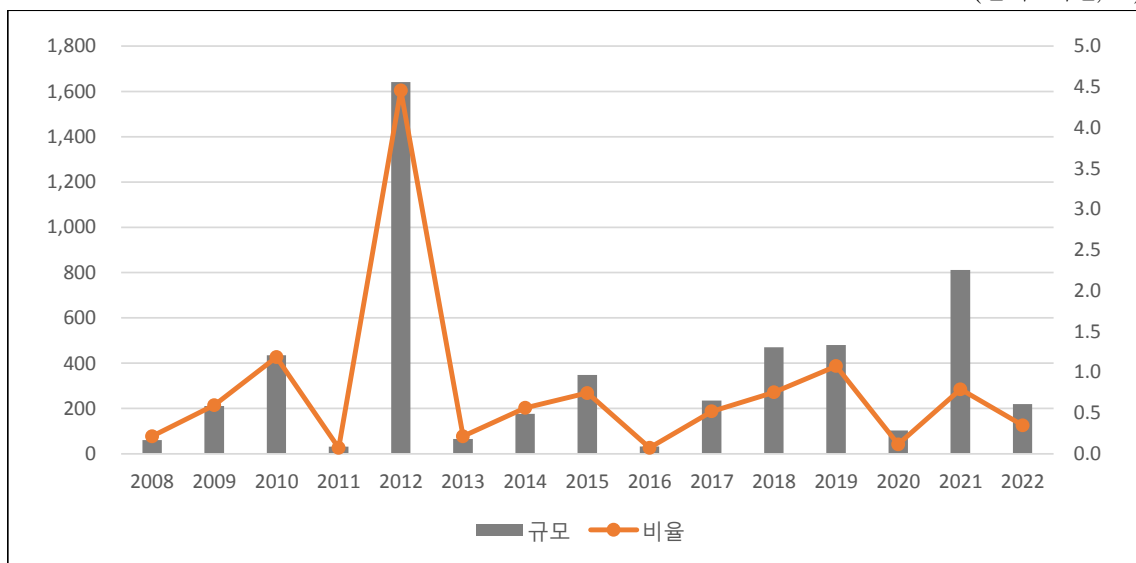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연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증권거래세	비율
2008	60	27,875	0.22
2009	211	35,339	0.60
2010	435	36,671	1.19
2011	31	42,787	0.07
2012	1,641	36,806	4.46
2013	66	30,771	0.21
2014	176	31,210	0.56
2015	348	46,699	0.75
2016	33	44,681	0.07
2017	235	45,083	0.52
2018	471	62,412	0.75
2019	481	44,733	1.08
2020	102	87,587	0.12
2021	811	102,556	0.79
2022(전망)	220	63,029	0.3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2008~2009;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0~2021.

[그림 II -2]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및 증권거래세 규모

(단위: 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2008~2009;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0~2021.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제14호14)에 따른 현물출자, 합병 및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수특례에 의한 양도에서 유발된 증권거래세 감면이 가장 많았음
 - 국세청에서 협조받은 「조특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해 감면받은 개별 납세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호별 연간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임
 -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는 연평균 281억원으로 연도별 평균 86.2%를 차지함
 - 2012, 2014, 2015, 2021, 2022년 증권거래세 감면액의 90% 이상이 동 조항에 의해 발생함

- 다음으로 감면규모 비중이 큰 조항은 2010년 신설된 제21호15)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추정지수의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양도에서 유발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21호에 의한 증권거래세 감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는 연평균 25억원으로 연도별 평균 15.1% 비중을 차지함
 - 2020년 감면 비중이 30.6%로 가장 많았으나 2021년 5.5%, 2022년 1.1%로 감소하였으며, 감면액 규모로는 2018년 48억원으로 가장 많음

<표 II -4>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항목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2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17①6	-	-	-	-	-	-
§117①7	-	0	-	-	4(0.1)	2(0.0)
§117①7의3	-	-	-	-	35(0.6)	-
§117①8	-	80(15.4)	-	-	4(0.1)	500(3.7)
§117①9	-	-	-	10(0.0)	36(0.6)	32(0.2)
§117①14	49(100.0)	366(70.4)	15,633(100.0)	32,426(100.0)	4,128(68.3)	11,125(81.9)
§117①16	-	74(14.2)	-	3(0.0)	71(1.2)	1(0.0)
§117①19	-	-	-	0(0.0)	-	-
§117①19의2, 3	-	-	-	-	-	-

- 14)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급 산입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표 II -4〉의 계속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17①21	-	-	-	-	1,749(28.9)	1,916(14.1)
§117①22	-	-	-	-	-	0(0.0)
§117①23	-	-	-	-	20(0.3)	4(0.0)
§117①24	-	-	-	-	1(0.0)	5(0.0)
계	49(100.0)	520(100.0)	15,633(100.0)	32,439(100.0)	6,048(100.0)	13,586(100.0)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17①6	-	-	-	-	-	
§117①7	7(0.0)	-	0(0.0)	-	0(0.0)	
§117①7의3	-	-	-	-	-	
§117①8	-	-	-	-	399(0.3)	
§117①9	16(0.1)	1(0.0)	0(0.0)	-	3(0.0)	
§117①14	23,352(81.1)	11,003(86.4)	6,621(68.2)	54,689(93.9)	149,536(98.0)	
§117①16	0(0.0)	6(0.0)	10(0.1)	7(0.0)	16(0.0)	
§117①19	-	-	-	-	-	
§117①19의2, 3	-	-	-	-	13(0.0)	
§117①21	4,812(16.7)	1,079(8.5)	2,976(30.6)	3,199(5.5)	1,677(1.1)	
§117①22	-	-	-	-	-	
§117①23	619(2.1)	7(0.1)	103(1.1)	189(0.3)	791(0.5)	
§117①24	1(0.0)	637(5.0)	3(0.0)	189(0.3)	124(0.1)	
계	28,808(100.0)	12,734(100.0)	9,714(100.0)	58,272(100.0)	152,560(100.0)	

주: () 안은 전체 감면 규모 대비 조항별 감면 규모 비율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2. 주요국과의 비교

가. 주요국의 증권거래세¹⁶⁾

□ 증권거래세는 주요 국가들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가 되어 옴

16) 김학수 외(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 미국 경제학자 케인즈는 대공황기 금융시장 단기거래(short-term trading)에 대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투기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증권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¹⁷⁾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ames Tobin도 외환시장 혼란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범세계적으로 동일한 조세제도를 권고¹⁸⁾하는 등, 케인즈와 유사한 주장을 1972년에 한 바 있음¹⁹⁾
 -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식거래세(share transaction taxes) 부과는 축소되는 추세를 보임
 - 미국은 1966년 증권거래세를 폐지, 일본은 1999년 주식거래세를 폐지, 독일은 1991년 주식거래세와 1992년 자본세(capital duty)를 폐지
 - 오스트레일리아는 2001년 주식양도에 대한 연방인지세를 폐지하였으며, 이탈리아는 2000년에 자본세와 거래세를 크게 인하함
 - 프랑스는 2009년 주식거래세를 폐지하였으나, 2012년 재도입함
- 증권거래세를 찬성하는 미국 등 국가에서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됨
- ① 증권거래세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연방의 세입을 증가시켜줄 것이라는 점
 - ② 증권거래세가 금융시장의 투기적 행위를 억제시켜줄 것이라는 점²⁰⁾
 - ③ 찬성론자들은 증권거래세가 연방세입을 크게 증가시켜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시행이나 또는 국가채무 축소에 재정 여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²¹⁾
 - ④ 또한 경제적 자원이 금융부문에 의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는 이처럼 풍부한 여유를 갖는 금융산업으로부터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²²⁾

17) Matheson, Thornton, "Taxing Financial Transactions: Issues and Evidence," IMF Working Papers, 2011, p. 12, <http://ssrn.com/abstract=1784582>.

18) Ibid.

19) 그 이후 문헌으로, Tobin, James,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The Eastern Economic Journal*, 1978, 4(3-4), pp. 153~159.

20) Goldberg(2013), p. 303.

21) Ibid.

22) Ibid.

- ⑤ 증권거래세는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단기거래를 축소시킴으로써, 금융시장에서 투기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내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부 거래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초단기 고빈도 거래행위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것²³⁾
- 증권거래세 반대론자들은 증권거래세가 투자가의 자본배분(capital allocation)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질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경제에 부담을 지운다고 봄²⁴⁾
 - 반대론자들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면, 투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Schwert and Seguin(1993)은 증권거래세가 투자를 억제하는 자본비용(capital costs)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함²⁵⁾
 - 시장의 효율성 훼손 이외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증권거래세에 반대함
 -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를 조장하는 유동성 훼손과 가격 발견(price discovery)도 증권거래세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포함
 - 아리조나 대학의 경제학자 Allen Atkins and Edward Dyl는 증권거래세가 주식가격의 변동성(volatility)을 줄여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²⁶⁾
 - 또한 증권거래세가 시장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개인 투자가와 중산층에 의도하지 아니한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²⁷⁾
 - 한편 증권거래세 부과는 거래비용을 감안하여 거래를 하지 않는 구간(no-trade zone)을 확대한다고 전제하면서, no-trade zone 내의 증권의 가격은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지 않게 되고 차익거래 유인(arbitrage opportunities)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 시장을 왜곡한다는 논거를 주장하기도 함²⁸⁾

23) 증권거래세 찬성론에 대한 자세한 논거에 대해서는 Habermeier and Kirilenko(2003), p. 4.

24) Matheson(2011), op.cit.

25) Schwert and Seguin(1993), pp. 27~35.

26) Goldberg(2013), p. 306.

27) Brown(2012), <http://www.advisorone.com/2012/10/04/a-securities-transaction-tax-will-hurt-advisors-an>.

28) Matheson(2011), op.cit.

1) 일본

- 1950년대에 일본은 주식 등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953년 「유가증권거래세법(有価証券取引税法)」을 제정하고 유가증권거래세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주식거래의 0.15%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했으며, 도입 이후 세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1981년에는 0.55% 세율로 과세
 - 1989년 4월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과세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0.3%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함²⁹⁾
 - 이때 도입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합한 형태였으며,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차익의 20% 신고분리과세 또는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 중 택일할 수 있었음
 - 이후 증권거래세율은 1988년 0.1%까지 여러 차례 인하됨

- 1998년 일본 조세위원회는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래수수료와 거래세(turnover tax)가 국제기준보다 높은 때에는 거래 자체를 일본 밖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1999년 4월 11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함
 -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일본 재무성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해 엔화 증권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게 될 것이라고 판단³⁰⁾

2) 독일

- 독일의 증권거래세는 1881년 「라이히 인지세법(Reichsstempelgesetz)」을 제정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인지세를 과세함으로써 처음 도입됨³¹⁾
 - 이후 1885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거래까지 인지세가 확대되었고, 1992년 「자본거래세법(Kapitalverkehrsteuergesetz)」이 제정되면서 증권거래세(Börsenumsatzsteuer)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됨

29) 문성훈·박종상·정원석,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 세제분과, 2015.

30) Schmitterer(2012), op.cit.

31) 황남석,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조세법연구』, 제27권 제2호, 2021, pp. 285~317.

- 「자본거래세법」은 사원권과 채권의 최초 취득(상장) 시에는 회사세(Gesellschaftsteuer)를, 후속 거래에 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독일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촉진법(Finanzmarktförderungsgesetz)」 제정과 함께 폐지됨
 - 증권거래세는 1991년, 회사세는 1992년 각각 폐지됨

- 이후 2008년까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Zinsabschlagsteuer)를 부과하였고,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주식 등 양도소득까지 비례원천징수세(Abgeltungsteuer) 과세³²⁾
 - 2009년 단일세율을 도입하면서 20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소득에도 과세를 실시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분리과세)되지만, 실효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소득공제는 개인의 경우 801유로, 부부합산의 경우 1,602유로 공제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수십억의 세금을 지출하면서, 유럽연합(EFU)은 위험부담이 높은 금융상품의 거래(금융투기)에 과세하는 방안으로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Tax, FTT) 도입을 논의함
 - 2011년 9월 당시 27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유럽 의회에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나, 영국, 네덜란드 등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함
 - 2012년 1월 프랑스는 금융거래세 단독 도입을 선언하였고 2012년 8월부터 금융거래세 도입
 - 2013년 2월 금융거래세 도입을 희망하는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EU11 FTT를 제시하였으나 도입시점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음
 - 그리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11개국이 참여

32) 김무열, 「독일의 자본자산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조세학술논집』, 제36권 제2호, 2020, pp. 195~227.

3) 프랑스

-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금융거래 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구제금융 비용확보 방안으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은행세(bank levy), 정리기금(resolution fund), 우발자본(contingent capital) 등이 제시³³⁾
 - 이후 EU와 G20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
 - 2009년 9월 벨기에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금융거래세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영국과 스웨덴은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미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검토를 공식화함
 - 2009년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영국 Gordon Brown 총리는 국제공조를 전제로 금융거래세 지지의사를, 미국과 캐나다는 반대의사를 표명함
 - 2009년 12월 벨기에에서 열린 EU 회담에서는 IMF가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촉구함
 - 2011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실행 방안을 유럽 의회에 공식 제출하였으나 11월 EU 27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영국, 네덜란드 등의 반대로 금융거래세 도입안 합의에 실패
 - 2012년 1월 프랑스는 금융거래세의 단독 도입을 선언하고 8월부터 발효되는 금융거래세를 승인함으로써 프랑스 수정 재정법안 제5조(French tax regulation pursuant to Article 5)에 따라 독자적으로 금융거래세를 도입함³⁴⁾
- 2012년 도입 시 금융거래세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시가총액이 10억유로 이상인 상장기업 지분주식을 매매할 때 0.2% 세율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였으며, 2017년 1월 금융거래세율이 0.3%로 인상됨³⁵⁾³⁶⁾

33) 김준석·황세운,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이슈&정책 2013-01』, 자본시장연구원, 2013.

34) Article 5 of the French Amended Finance Bill of 14 March 2012.

35) 프랑스 법령정보 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5509584&categorieLien=id>, 검색일자: 2023. 5. 17.

36) 프랑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bofip.impots.gouv.fr/bofip/7554-PGP.html>, 검색일자: 2023. 5. 17.

- 2023년 금융거래세가 부과되는 기업은 총 130개 기업이 해당됨³⁷⁾
 - 동법은 다음의 세 가지 조세를 도입했음
 - ①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과 기타 관련 증서(instruments)의 취득에 대한 조세
 - ② 초단타거래세(HFT tax)
 - ③ 국가부채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s on sovereign debt, CDS)³⁸⁾
- (지분증권 및 기타 관련 증서의 취득) ①유형의 프랑스 증권거래세는 가장 유동성이 있는 증권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순포지션에 대해 과세하고, 시장조성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함
- ①유형 증권거래세는 주식발행회사의 자본 또는 의결권에 접근하도록 해 주는 증권의 취득(acquisition)에 대해서만 적용
 - 즉 양도인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음
 -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거래면, 과세대상증권(instruments)과 과세대상시장(markets)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프랑스 증권거래세는 가장 유동성 있는 지분증권(equity instruments)에 대해서만 부과³⁹⁾
 - 또한 그 지분증권(instruments)이 프랑스, EU 또는 외국의 거래소(trading venue)에서의 거래가 허용된 것이어야 함⁴⁰⁾
 - 증권거래 취득세는 프랑스법에 의하여 상장된 회사가 발행한, 직전년도 12월 1일 시가총액이 10억유로 이상이고 (프랑스)국내외의 규제시장(regulated markets)에서의 거래가 허용되는 지분(equities) 또는 그 유사 증서(instruments)의 매수에 대하여 적용
 - 이 조세는 채무증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함⁴¹⁾
 - 프랑스는 매우 큰 회사채(corporate bonds) 시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조세를 지분시장에 국한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음⁴²⁾

37)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Impôts, <https://bofip.impots.gouv.fr/bofip/9789-PGP.html/identifiant=BOI-ANX-000467-20221221>, 검색일자: 2023. 5. 17.

38) Šramko(2015), op.cit. p. 58.

39) Gomber et al.(2014), op.cit., p. 2.

40) French Government(2013), Retrieved January 14, 2013, from <http://www.legifrance.gouv.fr/>.

41) Šramko(2015), op.cit., p. 57.

42) Bijlsma and Zwart(2013), <http://bruegel.org/2013/03/the-changing-landscape-of-financial-markets-in-europe-the-united-states-and-japan/>.

- 과세 범위에서 과생상품을 제외하였다는 점이 특징
 - 증권취득에 대해 0.2% 세율의 조세가 부과되고, 특정 거래일에서의 순포지션(net position)에 대하여 적용
 - 조세설계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음.⁴³⁾ 즉, 증권거래세가 자본비용 및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부과의 증대한 예외를 두고 있음.
 - 시장조성(market making)⁴⁴⁾과 관련된 헤징 활동(hedging activities)은 면세됨
- (초단타거래) 초단기매매에 부과되는 ②유형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초단타거래세는 하루 동안의 취소율 또는 주문변경률(rate of cancellation or order modification)이 일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때에 부과됨
 - 세율은 기준치를 초과한 취소 또는 변경된 주문 금액의 0.1%
 - 초단타거래세는 프랑스시장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⁴⁵⁾
- (국가부채 신용과산스왑) ③유형의 증권거래세는 CDS 계약 금액의 0.01%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한편 시장유동성이나 공모(公募, public offering)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거래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다양한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음⁴⁶⁾

43) 적용면제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1차시장(primary market)에서의 취득(Acquisitions)
- ② 정산/예탁과 관계없는 거래를 제외한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s: 상품거래업무 중에서 위탁 증거금의 예탁, 모든 차액계정의 수불 등 청산업무를 행하는 회사) 및 중앙예탁결제기관의 취득
- ③ 시장조성(market making) 활동과정에서의 취득
- ④ 유동성계약(liquidity agreements)에 의한 취득
- ⑤ 구조조정 및 집단내부간(Restructuring and intra-group) 취득
- ⑥ 재매입계약(repurchase agreements) 등 일시적 취득 증권
- ⑦ employee savings scheme에 의해 취득한 증권
- ⑧ 주식과 교환가능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채권(bonds)의 취득, Šramko,(2015), op.cit. p. 58 (note 25.)

44) 시장조성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상 금지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조성을 허용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장조성[market making](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1966&cid=42107&categoryId=42107>, 검색일자: 2023. 5. 15.

45) Šramko(2015), op.cit., p. 58.

-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대한 금융거래세 면제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에 대한 금융거래세 면제
- 증권금융(securities financing)에 대한 금융거래세 면제
- 그 밖에도 어음교환소(clearinghouse) 또는 증권예탁소(securities depository)가 수행하는 거래, 집단내부(intra-group) 거래,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의한 거래, 근로자투자제도(employee saving schemes)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해서도 면세⁴⁷⁾
- 이상 면세 제도들은, 투기적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거래자의 필요(needs)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됨

4)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프랑스 증권거래세 도입 8개월 후인 2013년 3월 증권거래세를 도입함
 - 장내 거래의 경우 0.12%, 그 외의 경우 0.22%의 세율을 매수자에게 부과하며, 시가총액 500만유로 이하의 기업은 면세, 고빈도 거래에 대해서는 0.02%의 세율을 적용
 - 2013년 9월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을 주식에 기초한 파생상품(선물·옵션)까지 확대하였으며, 계약의 명목가치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200유로까지의 정액의 거래세 부과
 - 이탈리아의 증권거래세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설계되었으면서도, 조세회피(tax evasion)의 가능성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다는 특징이 있음
 - 이탈리아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① 지분 양도에 대한 부과
 - ② 초단타거래조세에 대한 부과⁴⁸⁾
- 이탈리아법에 따라 상장된 회사 또는 이탈리아를 거주지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지분 또는 이에 준하는 증권(instruments)의 양도 또는 그 법적 거주지와 관계없이 다른 법인들이 발행한 상기의 그에 상당하는 증서의 양도에 대해서 적용됨
 - 규제시장(regulated markets)과 대체거래플랫폼(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MTFs)

46) Gomber et al.(2014), op.cit., p. 3.

47) Goldberg(2013), p. 303.

48) Šramko(2015), op.cit. p. 59.

- 에서는 그 세율은 0.1%이며 장외거래시장 거래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⁴⁹⁾
- 다만 장외거래시장에서는 차별적으로 0.2%의 세율이 적용됨
- 시가총액이 5억유로 미만 회사⁵⁰⁾의 지분거래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⁵¹⁾
- 파생상품거래는 고정된 금액이 과세되는바, 그 금액은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의 거래유형과 가액에 근거하여 결정됨
- 한편 지분양도에 대한 조세와 관련한 부과 면제 예외조항들은 프랑스와 유사하게 설치함
- 이탈리아의 초단타거래 과세는 프랑스와 유사하지만, 주문의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한 과세대상 최저기준치(threshold)와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프랑스와 약간 다름

5) 미국

- 미국은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연방세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으며, 1966년 기준 주식 발행 시 0.1%, 주식 이전 시 0.04%의 세율을 부과함
- 그 당시 제출된 증권거래세 법안을 논의하였던 하원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관세수입이 줄어들고, 국가에 매년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여 재정적자를 다른 재원에서 나오는 조세로 보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입각하여 입법화⁵²⁾
- 1914년 증권거래세는 주식 액면가에 0.02%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1932년과 1958년 사이에 주식의 액면가에 대한 세율이 0.04%부터 0.06% 사이에서 변화됨
- 1959년 세율은 종전과 달리 액면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으며 세율은 0.04%로 복귀
- 그러나 1965년 의회는 경제성장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Excise Tax Reduction Act of 1965에 의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함⁵³⁾
- 1967년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었고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는 세목으로 변화하였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함

49) Ibid.

50)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목록은 이탈리아 재무부가 매년 공표한다. Ibid.

5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최저치(the threshold market capitalization)는 전년도 11월의 평균 시가총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경우보다 최저기준치(threshold) 산정이 프랑스보다 더 정확하며 시가총액의 단기적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bid.

52) Goldberg(2013), p. 298.

53) Ibid.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⁵⁴⁾ 다시 등장
 - 의회는 빈번하게 증권거래세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 오고 있으나 미국에서 의회를 통과한 증권거래세 법안은 없음⁵⁵⁾
 - 2011년 제111차 의회는 몇 개의 증권거래세 법안을 제안했으나 증권거래세 시행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음
 - 한 사례로서, Peter DeFazio 하원의원은 일자리 창출 및 적자 감소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권거래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률안을 제안⁵⁶⁾했음
 - 이 제안은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심지어 같은 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음
 -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112차 의회는 이와 유사한 6개의 법안이 제출됨. 이들 법안들은 중산층 지원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13년 제113차 의회에서도 종전의 증권거래세 법안을 보완한 법안이 제출되었음
 - 2014년 제114차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안이 제출되었음⁵⁷⁾
 - 일종의 로빈후드세(“Robin Hood” type tax)⁵⁸⁾인 증권거래세가 미국의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해악을 가져올 것인가는 현재로는 확실하지 아니하다⁵⁹⁾는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 제31조(the Section 31 Transaction Fees)에 의해 증권 거래수수료(transaction fee) 부과⁶⁰⁾

54) Goldberg(2013), p. 297.

55)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Should the Legislature Act as Robin Hood?, 32 REV. BANKING & FIN. L. 297, 2013.

56) H.R. 676, H.R. 1068, H.R. 3151, H.R. 3379, H.R. 4191, H.R. 4646, and S.2927 등

57) Keightley(2015), op.cit.

58) 로빈후드세(“Robin Hood” type tax)란 중세 영국의 의적(義賊) 로빈후드가 탐욕스런 귀족이나 성직자, 상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금융회사나 기업, 개인 등의 과도한 소득에 높은 세금을 매겨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쓰자는 취지로 제안된 세금(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0662>, 검색일자: 2023. 5. 15.)

59) Holmes, Frank, “Risk Of Going Hungary With A Financial Transaction Tax,” 2012, <http://www.forbes.com/sites/greatspeculations/2012/09/27/risk-of-going-hungary-with-a-financialtransaction-tax/>

- 금융감독원(the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 등과 같은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Organization)와 증권거래소(national securities exchanges)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증권의 규모에 따라 거래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⁶¹⁾
 - 자율규제기구는 그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시 그 회원인 중개거래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거래부담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초래⁶²⁾
 - 증권 거래수수료는 1년 또는 반년마다 조정이 이루어지며, 현재 수수료율은 100만달러당 8달러, 증권 선물거래에 대해서는 1회 거래당 \$0.00042 수수료가 부과됨⁶³⁾

- 미국에서 증권거래세를 반대론자와 찬성론자들이 논쟁하였지만, 증권거래세가 그동안 국가 재정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음
 -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20세기 미국에서 증권거래세 입법의 변화가 심하였음⁶⁴⁾
 - 찬반론 모두 보다 강도 높은 금융규제가 증권거래세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인식은 무모한 투기적 거래를 통제하면서도 금융시장의 통합성을 보전하는 입법적 타협안의 가능성을 보여줌

나. 해외 M&A 관련 세액공제 제도

1) 대만⁶⁵⁾

- 대만의 인수합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M&A법에 따라 세금 우대 조치가 제공됨
 - 회사가 분할하거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할 때, 합병된 회사에 지불할 대가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65% 이상 보유하는 경우 다음의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음

60) “SEC Fee” – Section 31 Transaction Fees, SEC(Aug. 15, 2007), <http://www.sec.gov/answers/sec31.htm>.

61) Goldberg(2013), p. 299.

62) “SEC Fee” – Section 31 Transaction Fees, SEC(Aug. 15, 2007), <http://www.sec.gov/answers/sec31.htm>.

63) “Fee Rate Advisory #3 for Fiscal Year 2023,” SEC(March. 1, 2023),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3-41>, 검색일자: 2023. 5. 15.

64) Ibid.

65) BUSINESS MERGERS AND ACQUISITIONS ACT Article 39

- 문서와 인증서에 대한 인지세(stamp tax) 면제
-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의 증지세(deed tax) 면제
- 양도된 유가증권 증권거래세(securities exchange tax) 면제
- 양도된 재화나 용역 사업세(business tax) 부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세 면제

2) 싱가포르

- 2015. 4. 1.부터 2025. 12. 31.까지 M&A 제도에 따라 완료된 적격 주식 인수 거래 비용에 대해 이중 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이중 세액 공제금액은 거래비용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기간에 따른 M&A 비용 공제율과 인수대금 상한선은 다음과 같음

<표 II -5> 싱가포르 M&A 비용 공제율과 인수대금

구분	2010. 4. 1.~2015. 3. 31.	2015. 4. 1.~2016. 3. 31.	2017. 4. 1.~2025. 12. 31.
M&A 공제율	5%	25%	25%
인수대금 상한선	\$100 million	\$20 million	\$40 million

자료: IRAS e-Tax Guid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2022.

- 이중 세액 공제의 지출 한도는 정부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출 상한액은 연간 10만달러 한도
 - 거래비용에는 주식 인수를 위한 법률, 회계, 세무 자문 비용 및 평가 비용 등이 포함되며, loan arrangement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3) 이탈리아

- 2021. 5. 25.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업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조치를 소개하는 새로운 법률 조례⁶⁶⁾를 공포
 -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해 예외적으로 가상이자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NID) 이자율을 기존 1.3%에서 15% 적용

66) Italy's Law Decree n. 73 of 25 May 2021, referred to as the "Sostegni-bis" decree(the Decree)

- 가상이자공제 제도란 기업의 고유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고유자본 투자 시 가상 이자액을 과세 대상인 투자 수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법인의 실질 과세 소득액이 낮아지고 결국 법인세가 감세 효과를 가져옴⁶⁷⁾
- 최대 500만유로(NID 75만유로)까지 가능하며, 법인세율이 표준 24%인 회사에게는 18만유로의 세금 효과
- 500만유로 한도를 초과하는 자본금 증액은 기존 1.3% 명목 이자율로 NID를 받을 수 있음

67) kotra, 해외시장뉴스, 「벨기에, 외국인 투자 매력도 세계 1위」,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15281, 검색일자: 2023. 4. 23.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1.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유지 및 강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개선하고 존속가치 규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재무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신설 법인 설립, 합병 및 분할은 사업 분야 및 지분의 재편을 동반하고 그에 따른 자산 및 주식의 이동과 양도가 발생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거래세 등의 세금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일어나는 주식 거래에 대하여 만일 과세 당국이 과세 계기(taxable event)로 삼는다면, 잠재적 인수 혹은 피인수 기업들 모두 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고, 적시 구조조정에 대한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

- 또한 기업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1세기 가까이 지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져 왔음(김학수 외, 2017 정리)
 - 찬성론자들은 증권거래세가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단기성, 투기성 거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를 축소시키고 투기자들을 시장에서 축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지대추구로 인한 자본분배 왜곡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주장
 - 반대론자들은 증권거래세가 투자자의 자본 배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금융시장의 질을 손상시키고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며, 유동성 훼손으로 말미암아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
 - 증권거래세의 경우 시장 효율성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국가에서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효율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투기성, 초단기성 거래에 대한 비용을 높여서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고자 할 경우 증권거

래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고려할 수 있는 정책수단

- 프랑스의 경우 2012년 초단기성 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고자 거래세를 강화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 시도
- 증권거래세의 과세 편의성 또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며, 2017년 기준 총 내국세 230.8조원 중 증권거래세수 실적은 4.5조원으로 내국세의 약 2%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며 세수 감소에 대한 고려는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송민경, 2019)

-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세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규율하고 있으나, 해당 세법 내에서도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항은 여러 곳에 산재(김종봉·윤태화, 2012; 김학수 외, 2017에서 재인용)
 - 「법인세법」 중 기업합병 등과 관련된 부분은 동법 제44조(제442조의2 및 제44조의3 포함)에 규정되어 있음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30조의5~제47조의3)와 제2장 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47조의 4~제57조)에 규정되어 있고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는 제5장의 10(제121조의26~제121조의32)에 규정되어 있음

<표 III-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내 주요 검토 내용

구분	내용
①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 양도의 경우	-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과 적격 합병 및 분할, 「조특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주식의 교환 및 이전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 선제적 사업재편기업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4호
②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19호, 제19호의2, 제19호의3
③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경우	-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 및 교환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양도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2호

<표 III-1>의 계속

구분	내용
④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기업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
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추 종지수 구성 종목 변경을 반영할 경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구성종목 변경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

자료: 김학수 외(2017)에서 일부 추가

- 해당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혹은 조세수입 감면 규모는 통상 전체 증권거래세 규모의 1% 이하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규모를 보면 통상 연 100억원 이상에서 최대 1,600억원 이상도 발생(<표 III-2> 참고)

<표 III-2>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및 증권거래세 규모

(단위: 억원, %)

연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증권거래세	비율
2008	60	27,875	0.22
2009	211	35,339	0.60
2010	435	36,671	1.19
2011	31	42,787	0.07
2012	1,641	36,806	4.46
2013	66	30,771	0.21
2014	176	31,210	0.56
2015	348	46,699	0.75
2016	33	44,681	0.07
2017	235	45,083	0.52
2018	471	62,412	0.75
2019	481	44,733	1.08
2020	102	87,587	0.12
2021	811	102,556	0.79
2022(전망)	220	63,029	0.3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2008~2009;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0~2021.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조특법」 제117조 1항 제14호⁶⁸⁾에 따른 현물출자, 합병 및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수특례에 의한 양도(<표 III-1> ①의 경우)에서 유발된 증권거래세 감면이 가장 많았음
 -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는 연평균 281억원, 비중은 86.2% 정도
 - 특히 2012, 2014, 2015, 2021, 2022년의 경우 증권거래세 감면액의 90% 이상이 해당 조항에 의해 발생

- 다음으로 감면규모 비중이 큰 조항은 2010년 신설된 제21호⁶⁹⁾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추정지수(Exchange-Traded Fund, ETF)의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양도(<표 III-1> ⑤의 경우)에서 유발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는 연평균 25억원, 비중은 15.1%를 차지함
 - 2020년에는 감면 비중이 30.6%까지도 기록하였으나 2021년 5.5%, 2022년 1.1%로 감소하였으며, 감면액 규모는 2018년 48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 활동을 위한 본 제도의 활용 현황과 추세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① 정부 개입 타당성 및 지원 대상의 적절성 ② 지원 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③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
 - 2017년 이후 우리나라 포함 주요국의 증권거래세 제도 및 운영현황 변화를 살펴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중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하여 검토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든 기업 구조조정 활동, 특히 기업 분할이 기업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 분할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중심으로 기업분할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업 분할 제도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회사법의 특유한 제도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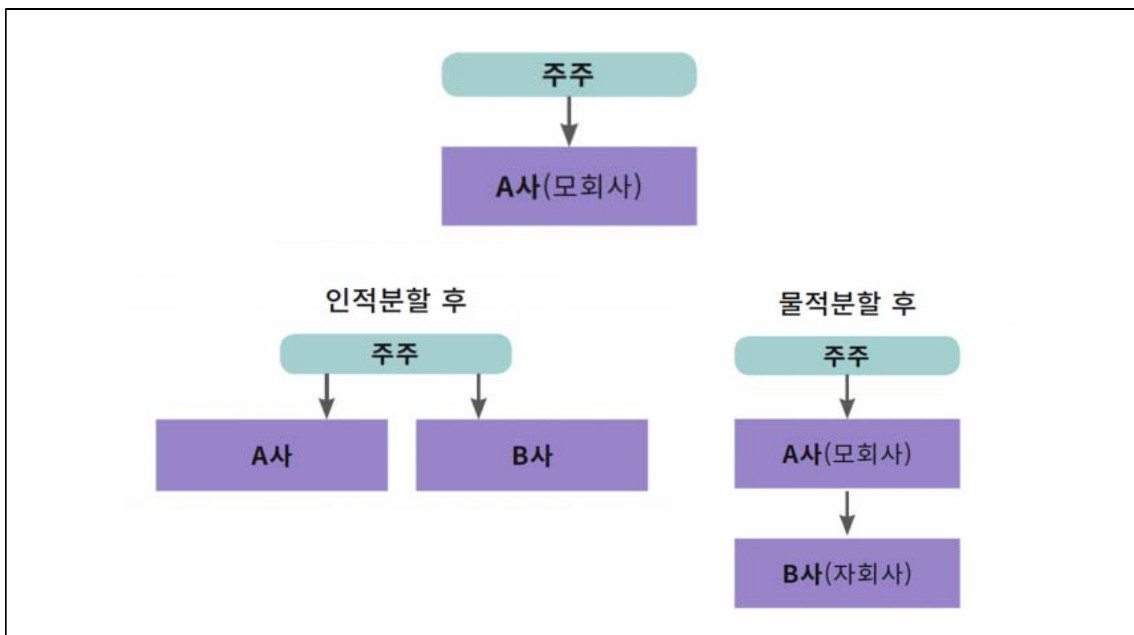
68)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급 산입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라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8년 12월 28일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분할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류호연·이수환, 2022)

-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업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있음
- 기업분할은 인적(수평) 및 물적(수직)분할로 나눌 수 있으며([그림 Ⅲ-1] 참고)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서는 인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및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모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
- 그런데 기업 분할 제도를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이관휘, 2021) 국가가 이러한 목적의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면제해 주는 것은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동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부터 2021년까지 구조조정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전체 건수가 2,481개인데 분할공시가 482건(남길남, 2022 참고)임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는 면제 적용 전체 건수 중 분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조세 감면 액수는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크지도 적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Ⅲ-1] 기업의 인적·물적 분할



자료: 이관휘(2021)

-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한 일부 사항도 기업분할 관련 사항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음
 - 기업집단 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효율 제고 목적으로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2001년 LG를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162개로 증가(조성익·양용현, 2017)
 - 장점으로는 일단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가 상당히 간명화되어 내·외부 감시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하여 기존 지배주주의 기업지배력이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모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음

2. 선행연구 검토

가. 기업 인수·합병 관련

- 인수·합병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대체로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수·합병 활동은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De Young et al., 2009), 자본의 증가 및 보다 효율적인 고용주-근로자 매칭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Siegel and Simons, 2010; Schiffbauer et al., 2017 등)
 - David(2021)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수·합병 활동으로 인하여 총생산이 약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약 9%는 인수·합병의 기업 생산성 개선으로 인한 직접효과로 인한 것이며 약 6%에 달하는 효과는 경제의 성질 변화로 인한 기업의 구성 변화로 인한 것임
 -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의해 진행되는 공격적인 스타트업 기업 인수·합병 활동이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을 막고 경쟁을 약화시켜 성장동력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지만(Kamepalli et al., 2020)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인수·합병 활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존 연구 정리는 김학수 외(2017) 참고

나. 기업 분할 관련

- 기업 분할의 효과에 대한 국외연구는 대부분 단기 시장반응과 장기 추가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결론을 제시(박진우·이민교, 2019)
 - Prahalad and Hamel(1990)은 기업분할을 통해 사업 전문화를 확보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높은 성장성을 가진 사업부문의 가치가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 Berger and Ofek(1995)은 사업부문 간의 관련성이 낮은 다각화는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기업분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문화 가설을 제시
 - Desai and Jain(1999)은 모회사의 집중화 정도가 상승하거나 이중 부분으로 분할한 경우에만 긍정적 공시효과가 나타나고 기업가치가 개선된다고 밝힘
 - Burch and Nanda(2003)도 다각화된 기업의 분할에서 기업가치 개선효과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고

- 반면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기업 분할 연구들은 다수가 자사주를 활용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등을 이용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보다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제시
 - 김준석(2022)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장기업 인적분할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마법은 주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
 -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이용한 인적분할과 이어지는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배주주의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인적분할 이전에 비해 각각 15%p, 11%p 증가하여 지배력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
 - 반면 외부주주의 시가총액 보유비중은 인적분할 이전에 비해 6%p 감소하여 지배력뿐만 아니라 부의 배분에서도 왜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 자사주 마법이 가능한 것은 경제적으로 기업 자산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자사주를 법령상 자산으로 인정하는 모순이 원인이라고 주장
 - 지배력 남용을 줄이고 자사주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자본의 환급, 주식의 소각으로 간주하는 일관된 규제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 남길남(2022)은 2010~2021년 동안 일어난 2010~2021년까지 물적분할을 한 189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이전 기간 기업가치 표본 1,284개와 물적분할 이후 기업가치 표본 925개를 산출하여 비교

- 물적분할 기업의 물적분할 이전 기업가치는 평균 1.88이었으나 물적분할 후에는 평균 20.2% 증가한 2.26이었으며 특히 유가증권 기업의 기업가치 증가율 평균은 54.7%로 나타남
 - 17개의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사례(연 신규상장기업의 20% 수준)를 살펴보고 표본수 부족으로 정확한 실증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상장 자회사는 신규상장기업 중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모회사는 자회사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유의하게 하락함을 확인
 - 즉 기업가치 측면에서 물적분할 후 쪼개기상장을 비롯한 모자기업 동시상장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물적 분할이 통념과는 달리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의미
- 송은해(2018)는 2015~2017년 사이에 이루어진 78건의 물적분할 사례를 분석했으며 분할된 신설 자회사가 모회사의 100% 자회사로 남아 있는 경우는 43건(55.1%)에 불과함을 확인
- 나머지 35건은 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의 지분구조에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이 중 25건은 존속회사가 신설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로 확인
 - 자회사가 모회사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 부문이었다면, 이 같은 지배력 상실이 모회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 박진우·이민교(2019)는 거래소 상장기업 중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들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분석
- 분할 이후 현물출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주회사 주가가 사업회사 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여 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개인투자자는 지주회사 주식을 순매수함으로써 투자손실을 보고 있음을 확인
 - 단순한 사업구조를 가진 중견기업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

3. 관련 제도 현황 및 변화

- 「회사법」(「상법」 제3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포함)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법률들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개정을 거쳐 옴
 - 한계기업들을 연착륙시키고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인가 아니면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났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법률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음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30조의5~제47조의3)와 제2장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57조의4~제57조)에 규정되어 있고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는 제5장의10(제121조의26~제121조의32)에 적시되어 있음(김학수 외, 2017)
 - 「조세특례제한법」 외에도 「법인세법」(제2장 제6관 제44조3, 제26조의5, 제47조, 제47조의2)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장 제5조 제⑨항) 등에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가 존재
 - 이후에서는 2017년도 심층평가 이후에 발생한 변화들에 대하여 정리
 - 이전의 관련 제도 변화 연혁들은 김학수 외(2017) 참고

가. 증권거래세 변화

- 2017년 수행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증권거래세 감면 제도 심층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과세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
 - 증권거래세에 대한 찬반론이 여전히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세계 추세는 투기거래 억제보다는 자본시장 효율성 강화 및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이라고 주장

- 실제로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동 감면 제도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크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타당
 - 2019년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각 0.05%(0.35 → 0.25%, 0.50 → 0.45%) 인하되었고, 코넥스 상장 주식은 0.2%(0.30 → 0.10%) 인하됨

- 비상장 및 코넥스 상장 주식의 경우 이후 추가적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21년에는 증권거래세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 및 장외거래 주식에 대해 각 0.02%(0.1 → 0.08%, 0.25 → 0.23%, 0.45 → 0.43%) 인하됨
 - 2023년에도 또다시 인하되어 2023년 기준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05%(+ 0.15% 농어촌 특별세)·코스닥 0.20%, 코넥스 0.10%, 비상장 및 장외거래 0.35%
 - 2025년 최종적으로는 코스피 0%(+농어촌 특별세 0.15%), 코스닥 0.15%, 코넥스 0.10%(유지)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 단, 기업 구조조정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외거래(기분) 수수료(0.35%)의 경우는 현재까지 발표된 감면 계획은 없음
- 2019년 12월 외국법인이 국내 증권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권을 시장거래를 통하여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해 주던 조항(「조특법」 제117조 1항 6호) 폐지

나. 「조세특례제한법」 변화

- 2019년 12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가 일부 축소
- 기존에는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하여 해당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
 - 개정 「조특법」에서는 이 경우에도 현물출자 후 4년까지는 과세이연의 특례가 적용되나 그 이후에는 3년에 걸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나눠서 내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 도입(「조특법」 제38조 2항 3호)
 - 다만 해당 조항은 2021년 12월 2일에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간 적용 유예 연장이 결정되어 있음

다. 국내·외 주주이익 보호 관련 법체계 현황 및 변화

- 국내 자사주 관련 내용은 회사법(「상법」 제3편 회사)에 규정되어 있음
- 「상법」 제341조 제②항에 따라 사실상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며 제342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 처분 가능

- 「상법」 제418조는 제①항에서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의 비례적 권리를 보장(신주 배정 권리)하고 있지만,
 - 제②항에서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주의 이익과 배치되는 제3자 배정 가능성을 열어둠
 -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자사주를 KCC에, 2015년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역시 KCC에 처분한 사례가 대표적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관희, 2022)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물적 분할을 포함한 회사분할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별도의 제도가 아닌 주총에서의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이하 류호연·이수환, 2022 일부 내용 요약 정리)
- 집단소송 등을 통하여 주주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경우는 굳이 별도의 소액주주 보호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부 주(州), 특히 일본의 경우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제도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음
 - 미국 뉴욕 및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은 회사 분할을 구성하는 거래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19년 6월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에서 「그룹지배구조시스템 가이드라인(グループ・ガバナンス・システムに関する實務指針)」을 제정하여 상장 자회사에서의 이해충돌 방지와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
 -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상장과 관련하여, 모회사는 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 향상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상장 자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최적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① 상장 자회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②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독립적인 의사 결정 보장 등)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
 - 모회사는 ①, ②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공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것

이 요구되며 상장 자회사는 시장 신뢰 확보, 투자자에 대한 책임 관점에서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

- 해당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 2020년 2월 동경거래소는 상장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상장자회사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모회사)는 ① 그룹경영에 관한 관점 및 방침을 근거로 한 상장자회사를 보유하는 의의, ② 상장자회사 지배구조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적시

-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9월 물적분할 시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및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등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추가
 - 이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온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으로 인한 모기업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자 도입한 장치이자 대선 공약 사항 이행 작업
 -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업들은 물분대신 인적분할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짐(『이코노미스트』, 2022)

4. 정책 목적 및 대상 설정의 타당성

-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형태 또는 소유구조의 개편을 수반하는 제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생존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 간주(김종봉·윤태화, 2012; 김학수 외, 2017에서 재인용)
 - 기업이 영리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자본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이를 과세 계기(taxable event)로 삼는다면, 구조조정 후에 기업에 존속될 자산은 감소할 것이며 이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목적과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김학수 외, 2017)
 -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당면한 주요 경제현안 중 하나이며 조세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인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김학수 외, 2017)

- 다만 같은 관점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활동이 기업의 효율성 제고가 아닌 다른 목적(시장지배력 혹은 대주주 지배력 강화 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다룰 예정)
 - 특정 기업 구조조정 활동의 성격에 따라 거래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타당하겠지만 이는 조세당국보다 관련 금융당국(금감원, 거래소 등)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
-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과세는 기본적으로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합병(인수)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미실현이익이 합병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자본이득에 대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합병법인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대상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도 과세 문제가 발생
 - 또한 주식(지분)이 인수합병 거래 시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하여 유상으로 이전 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적격합병 여부가 기업 합병에 따른 세부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
- 그런데 인수·합병 활동은 장기에서의 기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증권거래세의 주 과세목적인 투기 억제 및 변동성 감소와는 다른 종류의 경제효율성 개선 활동
- 기업 효율성 제고보다는 시장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도 이루어지지만, 상장기업 혹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된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 및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음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PEF)에 의한 경영권 인수 및 구조조정 활동 또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및 부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인수 후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예금보험공사)의 활동과도 본질적으로 유사
- 기업 분할 활동 또한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류호연·이수환, 2022)
- ① 특정 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해당 사업

영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음

- 만일 회사 내의 사업부문 간 관련성이 낮을 경우, 다른 사업부문들과의 상호 지원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기업가치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회사 내 다수의 사업부문 중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이익을 내고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의 분리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이익 극대화 가능
- 또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부문이라 하더라도 분할 이후 합병을 통하여 규모의 확대 및 효율성 개선을 추구할 수 있음

○ ② 사업부문 단위로 회사를 분할할 경우, 각 사업부문은 각각의 경영실적을 주주에 의해 직접 평가받게 되고, 분할된 회사는 독립된 경영이 가능해지므로 경영자의 인센티브가 향상될 수 있음(이석영·유상열, 2004; 류호연·이수환, 2022에서 재인용)

□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논리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시성에 대한 요구가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만 제117조 ①항 16에서 증권거래세 면제를 규정

○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경우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장 제5조 ⑨항에서 해당 법에 따른 합병 전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세 감면을 실시하기 때문

- 1.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 법인·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3.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그 밖의 조세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구성 종목 변경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는 증권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이러한 활동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증가

○ 현재 「조특법」 제117조 제1항2, 제3항, 제5항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파생상품 시장조정자, 증권시장 조성자,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하여 이미 거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상황(이상엽 외, 2017)이며 이들 항목과 같이 시장활성화 지원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음

- 국내 지수추종 증권형 ETF의 구성 종목 변경을 위한 거래는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조조정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활동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앞서의 주식시정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면제 조치와는 상반될 뿐더러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효율성 감소 문제가 예상됨
 - 지수(index) 기반 국내 주식형 ETF의 거래에 대해서 현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비전문 투자자들을 보다 위험성이 높은 개별 주식 및 금융상품 투자에서 ETF 투자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세 및 관련 수수료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것은 이런 목적과는 상반되는 방향
- 다만 구조조정 활동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목적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기업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주식거래 대부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음
- 개별 구조조정의 성격에 따라 효율성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업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비지배주주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김준석, 2022)
 - 그러나 조세당국이 「조특법」 등을 통해 개별 구조조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조세당국의 당장의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당국과의 협조 속에서 조세당국이 과세 혜택을 받는 적격 요건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정책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 기업 인수·합병 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은 「조특법」 제117조 ①항에서 규정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할 경우 적용됨 (참고 1 참조)
- 또한 「법인세법」은 적격합병(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를 유예

- 적격합병으로 간주되는 요건은 「법인세법」 제44조 제②항에서 규정
-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장 제5조 ⑨항에서 합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대부분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117조 제1항 제16호에서 지주회사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구조조정 의 경우와는 달리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기관들의 금융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 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현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은행 중심⁷⁰⁾이며 최근의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다 각화 및 은산분리 완화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이는 증권거래세 감면 목적이나 방식의 문제는 아님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장 제5조 ⑨항 5. “그 밖의 조세”라는 과세감면 대상 규정은 합병·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조특법」 제117조 ①항 16.과 세제지원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님
- 기업 분할 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 역시 「조특법」 제117조 ①항 14에서 규정한 「법 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춰야 함(참고 1. 참조)
 - 적격분할로 간주되는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인적분할은 「법 인세법」 제46조 제2항(단, 부동산임대업 부문 등은 제외)에 규정되어 있음

참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2006.12.30. 개정)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2017. 12. 19 개정)

참고 2.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70) 10개 금융지주회사 중 한국투자, 메리츠를 제외한 8개가 은행 중심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참고 3.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09. 12. 31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1. 12. 31 개정>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010. 12. 30 개정>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1. 12. 31 개정>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1. 12. 31 신설>
-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6. 12. 20. 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2017. 12. 19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신설>

- 결국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제공되는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 지원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을 따지는 일 또한 관련 법제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면제 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은 해당 합병이 형식적 조직재편(적어도 조세 관점에서 그러한 성격의 합병)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 실현이익이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즉, 적격합병 혹은 적격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에 수반하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역시 일관성 측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

참고 4.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09. 12. 31 제목개정)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22. 12. 31 개정>

-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인적 분할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조 제①항 14)의 적용은 2019년 개정 「조특법」에서 도입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적용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이른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조특법」 제38조 제2항 제3호)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그 내용 및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 가령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경우에 대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4년까지 과세이연 후 3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과세특례범위 축소 조항은 2021년 12월 2일에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간 적용 유예기간 연장이 결정되어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 면제와 관련된 조항 또한 이에 맞추어서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즉, 만일 「조특법」 제38조 ②항3의 적용 유예가 연장된다면 「조특법」 117조 제①항14 또한 일관성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

6. 다른 구조조정 지원제도와 의 중복성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30조의5~제47조의3)와 제2장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57조의4~제57조)에 규정되어 있고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는 제6장의10(제121조의26~제121조의32)에 적시(김학수 외, 2017)
- 「조세특례제한법」 외에도 「법인세법」(제2장 제6관 제44조3, 제26조의5, 제47조, 제47조의2)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장 제5조 ⑨항) 등에서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가 존재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의 대부분은 증권거래세 이외에 자산의 양수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며, 「법인세법」 제44조의3에서 일정한 요건(적격합병 및 분할)을 갖추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는 이연되도록 규정
 -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특법」 및 그 밖의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조세를 감면
- 다른 인수합병 관련 조세부담과 비교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주식지분 거래에 수반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증권거래세 부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업 구조조정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다른 구조조정 지원제도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의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다고 하기는 어려움

7. 정리 및 제언

- 증권거래세는 효율성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투기성, 초단기성 거래에 대한 비용을 높여서 변동성을 줄인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더불어 과세 편의성도 존재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사항

- (대상의 적절성) 그렇지만 기업 구조조정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장기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증권거래세의 주 과세목적인 투기 억제 및 변동성 감소와는 다른 종류의 경제효율성 개선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존재
 - 국내 증권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구성 종목 변경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 또한 괴리율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며,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 지주회사 전환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구조조정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금융지주회사제도가 현재의 금융 환경변화를 다소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증권거래세 면제가 이들 별도 법령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은 아님
 - 다만 최근 교보생명의 금융지주전환 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가치 비 지배 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존재

- 단, 경제효율성 개선의 순기능과 부합하는 구조조정에 대해 조세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제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는 필요
 - 예를 들어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업 분할은 경제효율성 개선의 순기능과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금융당국 등과 협력하여 증권거래세 면제가 적용되는 적격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할 필요

- (내용과 방식의 적절성) 기업 구조조정 활동에 대한 과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외에도 「법인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관련 법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의 변화에 맞춰 상호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 증권거래세 감면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과세감면들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해당 취지에 맞춰 보완하는 역할이며 실제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업 구조조정 활동에 따른 과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조세당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거나 「조특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를 제기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안은 조세당국의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협동에 따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1. 효과성 분석 개요

가.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접근

- 효과성 분석의 방법론으로는 크게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실증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질적 분석의 두 가지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음
 - 실증분석은 실제 기업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활동에 「조세특례제한법」이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임
 - 질적 분석은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동 조항의 효과성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접근법임

-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건이 만족될 필요가 있음
 - 정책 또는 제반 상황의 변화 등의 여건을 통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해야 함
 - 두 집단에 대해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여부 또는 강도가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두 집단은 이를 제외하면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집단이어야 함
 - 위와 같이 처치 및 통제집단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비교를 수행할 경우 시간에 따른 추세 변화와 「조세특례제한법」의 영향을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자료 구득이 가능한 기간 중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직접적인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평가는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속하는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를 활용하여 적절한 실증분석의 가능성을 검토
- 구체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의 변화가 증권시장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짐을 활용
 - 증권거래세의 변화는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비용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변화함을 의미함
 - 따라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의 변화는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변화함을 의미함
- 코넥스 상장 주식과 타 시장 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차별적으로 변화되었음
 - 증권거래세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인하된 바 있음
 - 2019년 증권거래세의 인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각 0.05% 인하된 반면, 코넥스 상장 주식의 경우 0.2% 감면
 - 2021년 증권거래세의 인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각 0.02% 인하된 반면, 코넥스 상장 주식의 경우 추가적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음
-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를 이용한 실증분석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활용 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 거래가 대체로 소속 증권시장의 장내에서 이루어질 필요
 - 만약 실제 거래가 대체로 장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를 활용한 실증분석 수행은 실질적으로 어려움
 - 장외거래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상장 시장과 무관하게 변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논리를 적용할 수 없음

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청자료 현황

- 실증분석에 앞서 효과성 분석의 주안점을 탐색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활용 경향을 우선적으로 검토

○ 주권발행법인종목코드가 결측되지 않은 관측치에 한정하여 검토한 자료임에 유의

□ 신청자료 건수를 기준으로, 비과세면제사유에 따라 구분한 자료 분포는 다음 <표 IV-1>, [그림 IV-1]에 제시되어 있음

○ <표 IV-1>은 신청자료의 단순 빈도이며, 각 신청서별 매매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음에 유의하여 해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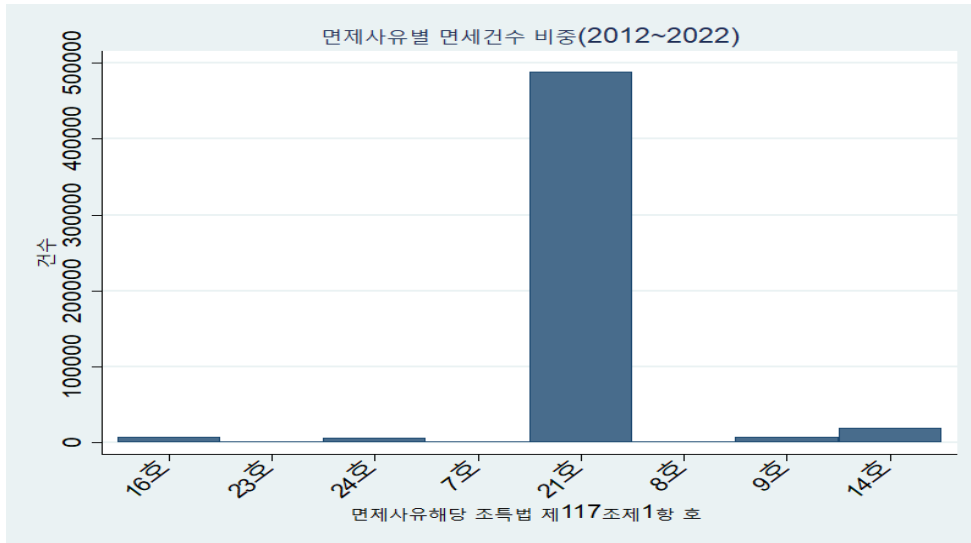
<표 IV-1> 비과세면제사유별 신청자료 건수 분포

(단위: 건, %)

면제사유	관련 법	신청자료 건수 (전체 대비 비중)
금융기관의 주주·금융지주회사 주식이전·교환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7,072(1.34%)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 기구의 재무구조 개선기업 투자 주권 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	161(0.03%)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을 교환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4호	6,264(1.19%)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등으로 주권·지분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585(0.1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종지수 반영을 위한 구성종목 변경 관련 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	487,907(92.41%)
예금보험공사등 부실금융기관 취득 주권·지분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17(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 주식·지분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9호	6,600(1.25%)
현물출자합병 및 분할자산의 포괄적 양수특례에 의한 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19,353(3.67%)
총 계		527,959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2012~2022년

[그림 IV-1] 비과세면제사유별 신청자료 건수 분포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표 IV-1>, [그림 IV-1]에 따르면, 신청 건수 기준으로 제21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신청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92.4%가량이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추종지수 반영을 위한 양도 신청 건수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함
 - 동 조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지속적인 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출 규모를 고려한 면제사유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면제세액을 기준으로 제117조 제1항의 호별로 구분하여 <표 IV-2>, [그림 IV-2]에 현황을 제시하였음
 -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단순 건수에 대비하여 효과성 검토 측면에서보다 중요할 수 있음

<표 IV-2> 비과세면제사유별 면제세액 분포

(단위: 백만원, %)

면제사유	관련 법	면제세액 (전체 대비 비중)
금융기관의 주주·금융지주회사 주식이전·교환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28,291.135(8.1%)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 기구의 재무구조 개선기업 투자 주권 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	1,156.94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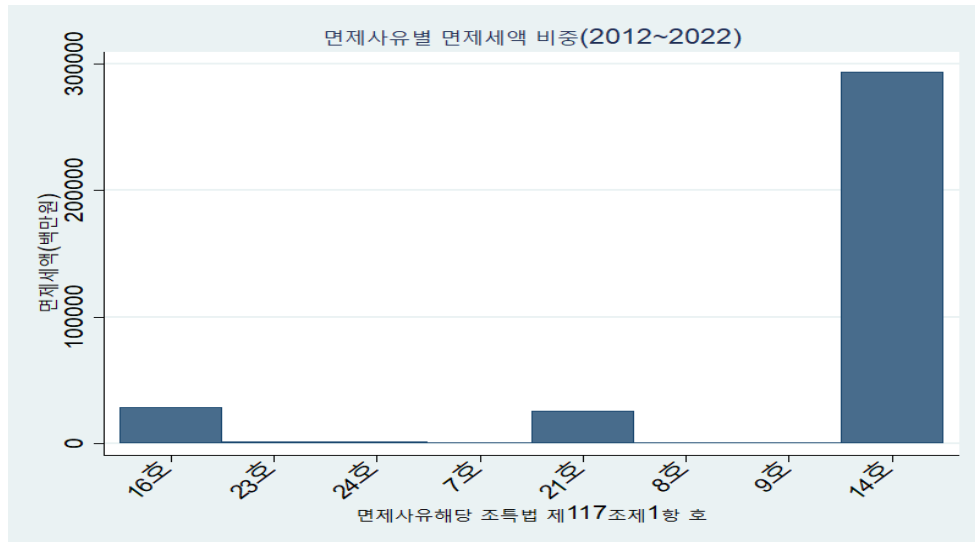
<표 IV-2>의 계속

(단위: 백만원, %)

면제사유	관련 법	면제세액 (전체 대비 비중)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을 교환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4호	1,236.153(0.4%)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등으로 주권·지분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15.900(0.000%)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추정지수의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	25,557.402(7.3%)
예금보험공사등 부실금융기관 취득 주권·지분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1,023.038(0.3%)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 주식·지분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9호	226.790(0.1%)
현물출자합병 및 분할자산의 포괄적 양수특례에 의한 양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293,787.563(83.6%)
총 계		351,294.9

주: 면제세액은 백만원 기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2012~2022년

[그림 IV-2] 비과세면제사유별 면제세액 분포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면제세액 규모는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현물출자합병 및 분할자산의 포괄적 양수특례에 의한 양도에 집중되어 있음

- <표 IV-1>에 제시된 신청 건수 비중에 따르면 제14호의 비중은 4%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면제세액의 비중은 83.6%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신청 건수 기준 전체의 92.4%를 차지하였던 지수 추종 관련 면제 금액(제21호)의 금액 기준 비중은 전체의 7.3%로 크게 낮아짐

□ 조세지출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평가의 효과성 분석은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현물출자합병 및 분할자산의 포괄적 양수특례에 의한 양도에 초점을 두어 진행

- 평가대상 항목이 정책 성과인 기업 구조조정 활동의 촉진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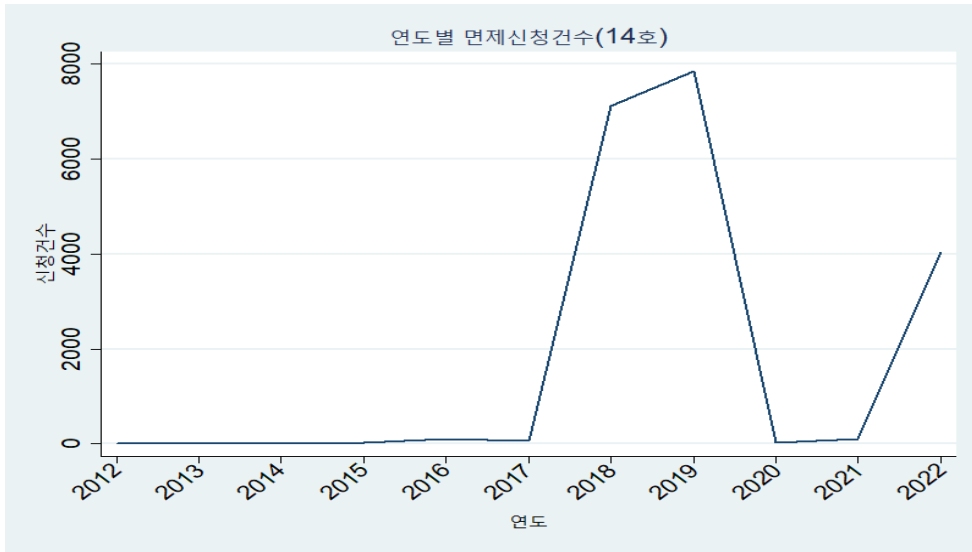
□ <표 IV-3>, [그림 IV-3], [그림 IV-4]는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분석 대상 세액면제 신청 건수 및 금액을 매해 연도별로 정리하여 제시함

<표 IV-3>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해당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현황
(단위: 건, %)

연도	신청자료 건수(전체 대비 비중)	신청금액 건수(전체 대비 비중)
2012	4(0.0%)	3.143(0.0%)
2013	7(0.0%)	15.429(0.0%)
2014	12(0.1%)	14,877.884(5.1%)
2015	30(0.2%)	28,486.793(9.7%)
2016	95(0.5%)	2,119.969(0.7%)
2017	68(0.4%)	12,643.035(4.3%)
2018	7,113(36.8%)	25,248.619(8.6%)
2019	7,844(40.5%)	6,060(2.1%)
2020	34(0.2%)	1,702.292(0.6%)
2021	107(0.6%)	54,912.668(18.7%)
2022	4,039(20.9%)	147,717.266(50.3%)
총계	19,353	293,787.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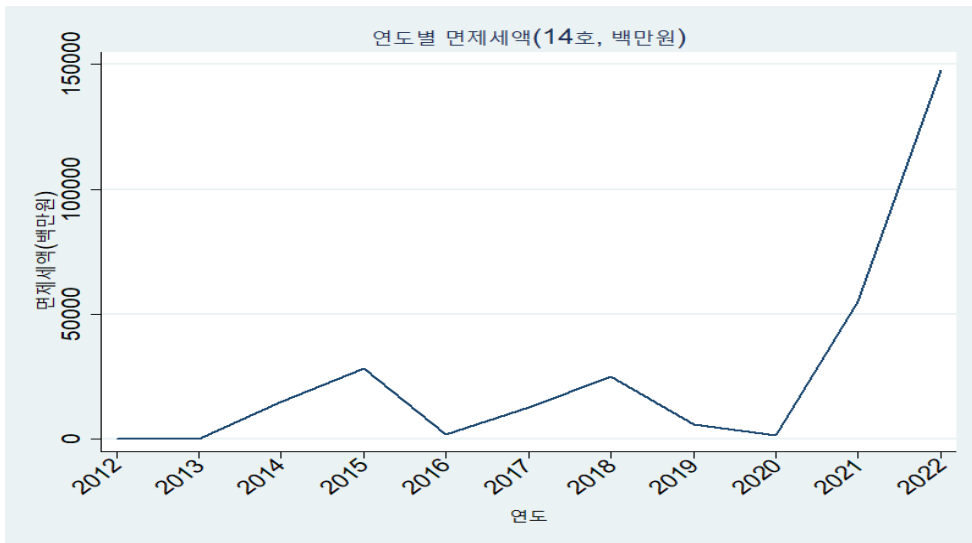
주: 신청금액은 백만원 기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그림 IV-3]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연도별 면제신청 현황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그림 IV-4]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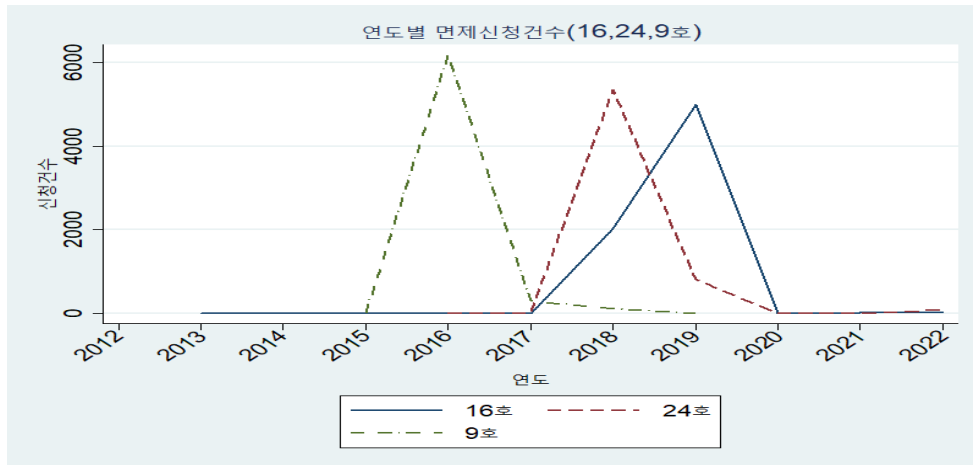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세액면제 신청 건수는 특정 연도에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 가능함
 -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2018, 2019, 2022년의 비중이 특히 높으며, 전체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세액면제 금액과 신청 건수의 분포는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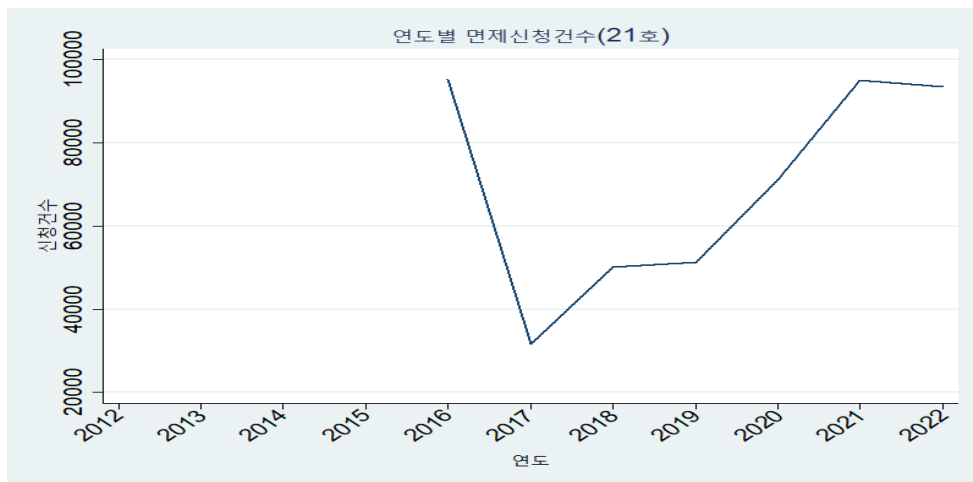
- 2019년의 매매는 전체 신청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나, 면제세액 규모의 비중은 전체의 2.1%에 불과함
 - 반면 2022년의 매매는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약 21%에 불과하였으나 면제세액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
- 제14호를 제외하고 면제 신청 건수 또는 금액의 비중이 1% 이상을 차지한 제16, 24, 9, 21호를 대상으로, 면제 신청 건수와 금액의 연도별 변화를 [그림 IV-5]~[그림 IV-9]에 제시함

[그림 IV-5]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 24, 9호 연도별 면제신청 현황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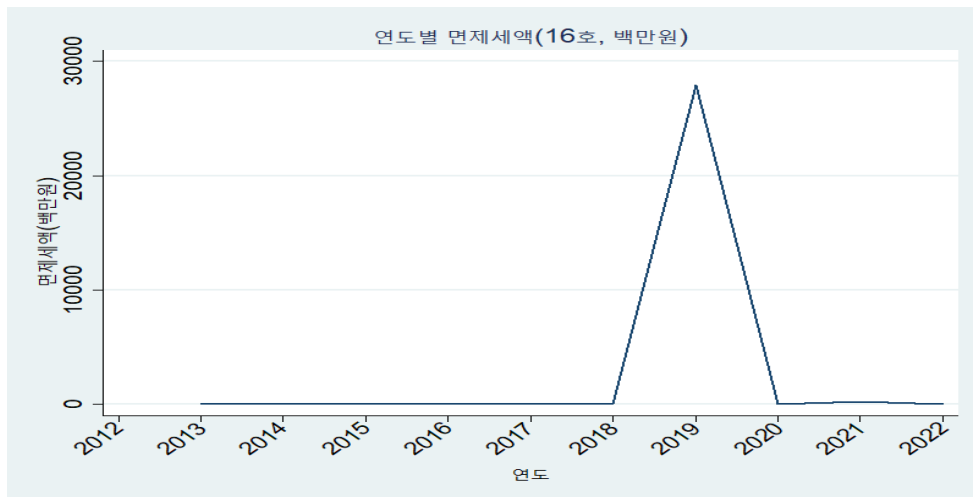
[그림 IV-6]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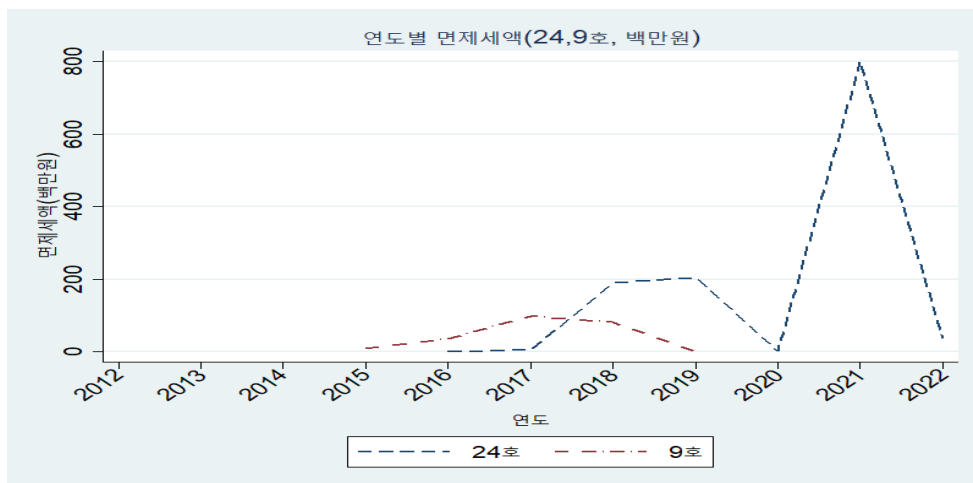
- [그림 IV-5]~[그림 IV-6]은 연도별 면제 신청 건수의 변화를 보여줌
 - 제21호의 신청 건수가 타 호에 비해 크게 많음에 따라 그래프를 분리하여 제시
 - 제16, 24, 9호는 각각 2016, 2018, 2018~2019년이라는 특정 연도에 신청 건수가 집중되어 있음
 -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적용되는 항목의 성격 보다는 특정한 이벤트에 적용되는 성격이 강한 조항임을 시사
 - 제21호는 연도별 변화폭은 크지만 신청 건수는 상시적으로 존재하였음
 - 주식시장의 구성종목 변경은 비교적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

[그림 IV-7]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연도별 면제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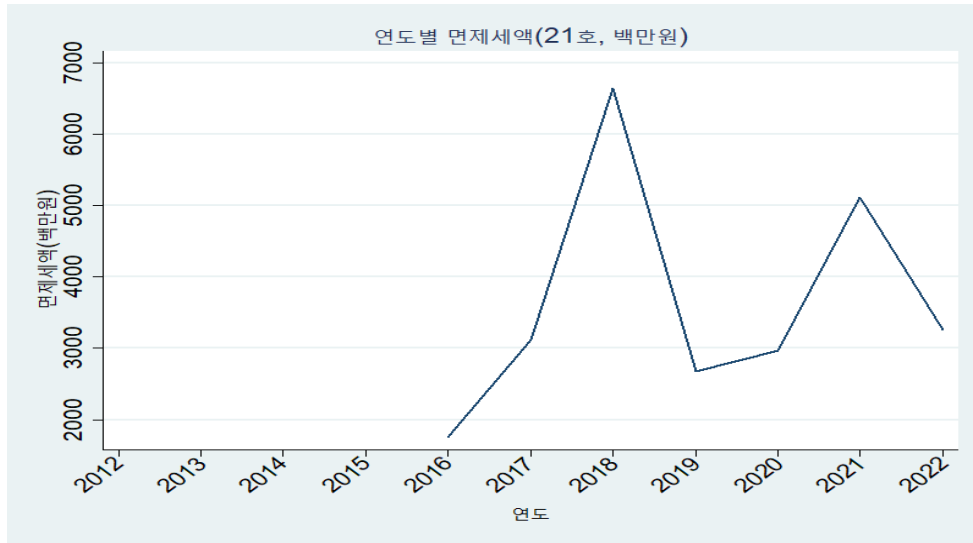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그림 IV-8]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4, 9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그림 IV-9]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그림 IV-7]~[그림 IV-9]는 연도별 면제신청금액의 변화를 보여줌
 - 제16, 21호의 면제세액 규모가 타 호에 비해 상이함에 따라 그래프를 분리
 - 신청 건수에 대한 그래프와 유사하게 제16, 24, 9호는 특정 연도에 신청금액 또한 집중되어 있음
 - 단, 제24호의 경우 2021년 신청 건수(7건)에 비해 면제신청금액이 크게 높음
 - 제21호에 대한 면제신청금액의 그래프는 신청 건수에 대한 그래프와는 상이한 패턴을 보여줌
 - 신청 1건당 면제신청금액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

다. 실증분석 여건 검토

-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수행의 적절성을 검토함
- <표 IV-4>는 금액 비중이 가장 큰 제14호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세 현황을 제시
 -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분석 대상 세액면제 신청 건수를 기간 및 증권 시장별로 구분하여 제시
 - 2019년 5월 30일 및 2020년 12월 29일부터 변경된 증권시장별 거래세율을 활용하여 개별 신청 자료의 주권이 소속된 증권시장을 구분

- 증권시장별 거래세율 변화는 <표 IV-5>에 정리

<표 IV-4>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해당 증권시장별 거래세 면제 현황
(단위: 백만원)

시점(매매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장외거래
~2019. 5. 29.	1				15,173
2019. 5. 30.~2020. 3. 29.	
2020. 3. 30~2020. 12. 28.	33
2020. 12. 29.~2022. 12. 27	4,146
2022. 12. 28~

주: 코스피 수치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및 언론보도(『이데일리』, 「증권거래세 인하, 오늘 주식 매도분부터 적용」, 2020. 12. 29.)의 내용을 활용하여 정리

<표 IV-5> 증권거래세율 변화

(단위: %)

시점(매매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장외거래
~2019. 5. 29.	0.30	0.30	0.30	0.30	0.50
2019. 5. 30.~2020. 3. 29.	0.25	0.25	0.10	0.25	0.50
2020. 3. 30~2020. 12. 28.	0.25	0.25	0.10	0.25	0.45
2020. 12. 29.~2022. 12. 27	0.23	0.23	0.10	0.23	0.43
2022. 12. 28~	0.15	0.15	0.10	0.15	0.35

주: 코스피 수치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자료: 『이데일리』, 「증권거래세 인하, 오늘 주식 매도분부터 적용」, 2020. 12. 29.의 내용을 재정리

<표 IV-4>는 평가대상 「조세특별제한법」에 대한 거래세 면제대상 거래의 절대 다수가 장외거래에서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 앞서 언급하였듯, 실제 거래가 대체로 장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를 활용한 실증분석 수행은 실질적으로 어려움

- 장외거래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상장 시장과 무관하기 때문임

종합하면 증권거래세율 변화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됨

대안으로 본 평가는 평가대상 「조세특별제한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동 조항의 효과성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접근법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라. 소결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기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14호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수행
 - 조세지출 측면에서 제14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됨

- 효과성 분석의 방법론 관점에서,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를 활용한 실증분석의 여건을 검토한 결과 실증분석 수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거의 모든 거래가 장외거래를 통해 발생함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를 활용한 실증분석 수행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됨
 -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율 변화는 시계열 측면의 변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기업에 대해 변화하는 타 제도, 정책,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한 행태 변화와 시계열 변화가 혼재됨

- 이 점을 고려하여 본 평가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효과성 분석을 수행함

2. 전문가 인터뷰 개요

가. 인터뷰 대상 선정

- 본 평가는 통상적인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
 - 응답자들이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동법의 관련성에 대한 실무적, 학문적 이해가 필요
 - 표집 대상 모집단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표본 수집이 어려움

- 선행 평가인 김학수 외(2017) 또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바 있음
 - 표본 조사 결과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명에 불과하였으며, 동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1명 중 3명에 불과하였음
- 이를 고려하여 본 평가는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효과성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전문가 인터뷰는 실무자 4명, 학계 4명으로 총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학계) 대학 교원 2명, 연구직 2명 총 4명으로 구성
 - (실무자) 회계법인·법무법인 재직 회계사 3명, 세무사 1명으로 구성

<표 IV-6> 학계 전문가

구분	소속
A	A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	B 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C	C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	D 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저자 작성

<표 IV-7> 실무 전문가

구분	소속	실무 경력
A	A 회계법인 회계사	21년
B	B 회계법인 회계사	11년
C	C 법무법인 회계사	33년
D	D 회계법인 회계사	27년

자료: 저자 작성

- 본 심층평가의 대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실무·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정하여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음
- 학계는 표적집단심층면접(FGI), 실무자는 심층면접(iDi) 형식으로 인터뷰 진행
 - 인터뷰 진행은 인터뷰의 취지, 조사의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대해 본

평가의 연구진과 사전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거친 전문 모더레이터(moderator)에 의해 이루어짐

- 상호 간 소통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FGI가 개별 인터뷰에 비해 선호될 수 있으나, 법인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무자들에 대한 인터뷰는 1:1 심층면접 형태로 진행하였음

나. 인터뷰 문항

- 인터뷰는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
 - 제도 관련 현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재확인
 -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의견을 묻고,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14호를 중심으로 동 조항의 효과성 및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들인 제16, 23, 24호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청취 후 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사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인터뷰의 특성상 사전 문항과 실제 인터뷰 진행이 다소 상이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인터뷰 가이드라인의 전문은 본 평가의 부록에 첨부

3. 학계 인터뷰 결과

- 인터뷰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함

가.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 요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

- 기업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또는 수익과 관련된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임

- 예를 들면 대주주 유지 여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산 및 주식의 평가 문제, 장기적인 수익 전망 등이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 요인임
- 조세부담과 관련된 사항을 구조조정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표 IV-8> 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 요인 관련 인터뷰 내용

-
- 제일 먼저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 내지는 지배권 유지 여부가 제일 중요시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대가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나 주식에 대한 평가 문제. 가치 평가 문제. 오늘 주제로 다루는 조세 등 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 문제가. 여기서 의사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 구조조정의 목적인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목적이니까 결국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다루는 조세특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를 일원화하려고 부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지,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법인세법」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
 - 적격 구조조정에 대한 규정은 「법인세법」을 따름
 - 구조조정 시 고려하는 조세제도의 핵심은 과세이연 요건의 충족 여부이며, 이 점에서도 법인세법이 중요
 -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증권거래세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다소 낮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구조조정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는 의미는 있음
 - 자산 중 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예상

<표 IV-9>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특별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
- 구조조정 세제가 「법인세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고 특례제도. 적격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 의견이나 그런 것도 다 「법인세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구조조정 하면서 먼저 「조특법」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특히 주식의 양도가 수반되는. 주식의 양도가 중요한 수단이 되는 구조조정에서는 오늘 다루는 이 조항을 염
-

<표 IV-9>의 계속

두에 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을 촉진 하는 데서 이 제도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조문을 보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대상이 누가 되는지도 상세하게 규정이 되면 좀 더 이용도가 높아질 거 같아요.

-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것을 우리 자료 마지막에서도 「조특법」 117조 1항에서 각 호별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 하는데 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연구보고서를 보면 전체 조세감면 중에서 거의 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법인의 합병 분할, 실물투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인데 이런 것들은 다 「조특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법인세법」에서 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바로 그 시점에서 장래로 과세를 이연시켜서 당장 구조조정 시점에서 세금부담을 먼 미래로 이연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말씀 드린 것처럼 기업의 수익성이 절대적인 변수이고, 사실 세금은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그 세금에 대한 고려적인 면에서 법인세법에서 다루고 있는 과세 이연 요건의 충족여부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도 제일 일반적인 합병 분할도 과세 요건을 사전에 맞춰서 셋업해서 합병 분할에 들어가지, 그걸 맞추지 않고 합병 분할 시점에서 세금을 부담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실무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따지면 「법인세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거기서 오늘 다루는 증권거래세 면제는 세금 부담이나 그런 중요성 면에서 상당히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부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더라도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별도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건 법인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워낙에 소규모 법인의 창업이나 가업성이나 거기 관련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증권거래세면제는 제일 마지막 항목에 가서 기타 간접세 감면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분리 상으로 중요성을 차지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요건들이 조세 관련한 고려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자산 이전이든 주식 이전이든 제일 중요한 건 양도 차익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우선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게 증권거래세예요. 이왕지사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증권거래세 면제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 하고 효율을 높이는 게 촉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식 소유 비중이 높은 기업은. 자산보다 부동산 보다 주식 소유 비중이 높은 기업은 증권거래세면제 효과가 좀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업 구조조정은 「법인세법」상 기업 분할 합병.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게 실제 실행 단계에서 재무구조 개선계획이 작성될 때가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택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자산 중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증권거래세 문제가 화두가 되는 것이겠죠. 지주회사 설립을. 지주회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지주회사가 구조개선 계획을 진행하는 경우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세율을 보면 이런 양도 경우에 부담하는 조세 부담이 법인세가 24.2% 증권거래세가 0.35%이니까 세율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평가대상 「조세특별제한법」의 존재는 의미 있음
 - 평가대상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인한 조세지출의 전체 규모는 국가 경제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편
 -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
 - 최근 경제여건, 한계기업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재편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표 IV-10> 향후 구조조정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대상 「조세특별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
- 2021년도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양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있었고 경제 위기 때문에 오는 거 같아요. 2021년에 8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반기에도 그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요. 또 이 유가 되는 것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이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대응할 수 있어서 그런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증권거래세 면제가 계속 혜택을 주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활동 말고 한계기업을 추이를 보면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코스피가 2021년에 11.5%가 한계기업이 코스닥이 20.5%. 평균 내면 상장기업의 17.5%라서 2016년 9.3%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한계기업을 사업재편 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뭔가 좀 더 메리트를 줘야 하고 혜택을 줘야 해서 점점 더. 그리고 경기가 좋아져도 선제적 사업 재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네. 증권거래세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세금 자체가 부수적인 요인이 있고 세금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당기업한테 현실적인 세금부담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의 비중이 미미하지만 해당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업에서는 중요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업들의 그런 재편 추세나 그런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씩 현실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게 그 금년부터 금융소득 투자세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금년도 시행을 앞두고 부랴부랴 2년 동안 시행을 미뤄서 2025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원래 금융투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부 방침이 거기에 대응해서 증권거래세를 선제적으로 입안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 입법 법안도 발의된 게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증권거래세 세금 부담 자체는 지금보다 좀 작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해당 기업들에게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적든 많은 세금 부담 자체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런 구조조정 수요를 반영해서 앞으로도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산 이전이든 주식 이전이든 제일 중요한 건 양도 차익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우선돼야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게 증권거래세예요. 이왕지사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

<표 IV-10>의 계속

증권거래세 면제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 하고 효율을 높이는 게 촉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식 소유 비중이 높은 기업은. 자산보다 부동산 보다 주식 소유 비중이 높은 기업은 증권거래세면제 효과가 좀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에 대한 견해

-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체로 제14호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며,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면제로 인한 구조조정 촉진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법은 과세에 대한 기업의 현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즉, 기업이 구조조정 상황에서 직면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는 의미가 있으므로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업이 연속성을 갖는 적격 분할·합병의 경우 조세지원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연속성 있게 지원될 필요

- 제14호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전원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조세지출에 비해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보다 크다고 판단
 -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킴에 따라 지출되는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 추후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
 - 실체가 동일한 적격 합병·분할 상황에서 자기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적절
 - 거래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조조정 관련 행태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고, 또한 정책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면제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

〈표 IV-11〉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 관련 인터뷰 내용

-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자기 주식, 기업이 자산 보유에서 자기 주식의 비중이 높아서 상법에서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주식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자기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주로 규모가 중·대규모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자기주식을 갖고, 구조조정 세제가 대부분 양도, 자산의 양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과세 구조 자체가. 그리고 양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에서 자기 주식 등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걸 볼 때,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구조조정을 촉진 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세 지출과 관련해서 보면 조세 지출 효과보다는 이 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순기능이 더 훨씬 크다고 보여져서 조세지출을 감안해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 기본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17조 제1항 제14호 요건들이 사실 「법인세법」상 과세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합병 분할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장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는데 실제 보면 실무에서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고려하고 절대 그런 회계법인 법무 법인 컨설팅에 그런 개편 방안을 내서 검토를 의뢰하는데 그러면 그런 의뢰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사업 성 측면에 더해서 그런 기업에 가서 이런 요건을 만족할 때는 당장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법인세가 당장 부담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요건이 돼서 증권거래세까지 부담하지 않는 게 사실 2차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를 이뤄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고 만약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돼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런 기업들이 현금부담이나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장래에도 계속 중요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효과성도 그걸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그 이후에 사업이 잘 되면 세금 일부 깎아 주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본 것처럼 조세지출 규모가 큰 수준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거나 폐지가 될 때는 조세규모가 적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크니까 충분한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차피 사업의 연속성에서 적격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경우에 혜택을 주는 거라서. 그 과세이율과 증권거래세 세제 지원이 일관성 갖고 연속성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드렸듯이 거래비용 최소화 측면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증권거래세 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표현되는 건 적격 합병이나 기업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이렇게 법인 기업이 확장하거나 수축하거나 분할 나뉘지거나 이런 경우에

<표 IV-11>의 계속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럴 경우 직접적으로 주식을 양도를 하죠. 그런데 법인 기업은 다르지 않거든요. 법인 기업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체는 법인의 실체는 사실상 동일한데 자기가 자기한테 매각하는 데에 그걸 과세를 한다는 건 일종의 당위성 문제로 하면 그건 불가하다. 그런 논리상. 과세하면 안 된다고 결론이 나와 하고. 효과성은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할 건데, 문턱을 없애 주는 거니까 효과성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법인의 실체가 변동이 없고.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주식을 취득하는데 지주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건 어떤 금전이 수반되는 거래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납세 여력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납세 하는 자산을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분 변동. 만일 납세하기 위해서. 물론 세율이 낮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납세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거나 이걸 지주회사를 선택하는 거에 장애가 될 소지도 있겠죠. 법인의 실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다.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3, 24호에 대한 견해

- 제16호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중 2명은 유지 필요, 1명은 의견 보류, 1명은 폐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유지 필요) 금융지주회사는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이 높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거래세 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단,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주회사의 지분 요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유지 필요)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있는 기관이 있음을 고려하면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일정 기간 동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
 - (의견 보류) 금융지주회사의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상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님에 따라, 개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폐지) 금융지주회사 관련 구조조정은 극소수 사례이며, 일반 지주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 제23호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중 2명은 유지 필요, 1명은 의견 보류, 1명은 폐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유지 필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핵심은 ‘선제 수행’으로 기업의 상태가 보다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유지 필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
- (의견 보류)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시장에서 상시 발생하는 구조조정과 다르게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
- (폐지) 법인의 주체가 달라지는 주식의 이전이라면 원론적으로 과세 필요

□ 제24호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중 3명은 유지 필요, 1명은 폐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유지 필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통상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유사한 효과가 예상되어 유지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유지 필요) 사업 재편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그 효과성도 높다고 판단되며, 사업 재편이 지연되어 영업 활동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지 필요) 사업구조 개편 및 신사업 진출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30에 담긴 양도차익 등 과세차익의 면제 및 이원화의 부수적 조항으로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폐지) 일몰 조항이 연장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움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기타 조항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대체로 면제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제7, 8, 9, 19호 모두 부실 기관의 정리를 위한 면제 제도인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활동임에 따라 조세지출이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유지할 필요
-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대해서는 면제 유지가 필요함
 - 단, 농협, 수협 등 부실 조합들의 정리와 관해서는 금융기관으로 통합하여 법 조항을 단순화하는 것을 제안함
- 금융기관(제7호)뿐 아니라 8, 9호에 대한 면제도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을 고려하면 제21호 또한 유지가 필요

○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대체로 유지가 필요

□ 단, 제21호에 대해서는 재고 의견이 존재

○ 제21호는 특정 상품 조성을 위한 조항으로 일반적인 시장 조성과의 상이함에 따라 특정 상품을 조성하기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표 IV-12>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3, 24호, 기타 관련 인터뷰 내용

(제16호)

- 금융지주 회사. 지금 설립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효용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일반 지주회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계속 남아 있는 만큼 이걸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제16호, 23호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를 다루고 있어서요. 굉장히 사례가 제한적이고. 금융지주회사나 재무안전 재무안정사무투자집합기구 라든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파악을 해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파악이 가능할 텐데 제16호, 23호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저도 금융지주회사가 좀 거의 다 전환해서. 거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교보나 수협은행이 금융지주 회사로 전환한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에 그 혜택이 있었고. 새로운 금융회사 전환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없어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폐지하기보다 몇 년은 했다가 나중에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효용성이 낮아도 지금까지 형평성을 위해서 약간 어느 정도 유지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 여차피 사업의 연속성에서 적격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경우에 혜택을 주는 거라서. 그 과세 이율과 증권거래세 세제 지원이 일관성 갖고 연속성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드렸듯이 거래비용 최소화 측면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증권거래세 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인 기업이 사실상 동일한 사이에서 자기가 자기 주식을 둘 다 자기인데. 이전하는 건데 과세. 다만 조건이 아까는 붙이지 않은 조건이지만 한국의 지주회사는 통상 지분율이 너무 낮아서 둘 다 자기라고 얘기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가 100%를 주식을 갖고 있거나 완전 자회사죠. 그리고 90% 이상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적용이 되는데 그 일몰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되는 것이 좋겠다고 먼저 결론을 말씀 드리고 싶고. 계속 되는 게 좋으나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90%. 한국의 특히 금융지주회사 지분율이 대개 48% 전후인 거 같은데 상당히 낮은 지분율이 낮은 것이거든요. 이게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우리 한국에 며칠 전에 통계인데 한국의 2년 전에, 지주회사가 188개인가 있어요.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런 거 같아요. 금융지주회사는 대략 30개가 있고 대규모 지주회사는 대개 금융 쪽이에요. 대규모 워낙 금융회사 자체가 자산 규모가 방대한데다가 금융지주
-

<표 IV-12>의 계속

회사. 금융지주회사가 전체 금융지주회사 중 숫자가 적지만 자산 총액으로 순서를 매기면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 초대형 들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상당히 그렇다면 아무리 세율이 낮아도 금액 자체가 클 것이고요. 일몰조항을 계속 효력을 다시 부여해서 다시 설치할 경우라도 지분 요건을 꼭 높여야 하지 않을까. 높여서 하는 제한적으로 계속 하자는 제안 정도로 드러 봅니다.

(제23호)

-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선제적으로 수행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 파탄상태에 이르기 전에 시행이 되는 거라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동 조항의 효용성, 중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 재무구조 개선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규약법이나 기초법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부산법. 이런 데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지출 정도가 적더라도 효용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모든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게 증권거래세 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인 인격이 주체가 다른 존재예요. 구조조정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법인기업들이 다른 주체 사이에 주식이 이전되는 상황이면 이걸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면제 조항을 없애는 게.

(제24호)

- 사실 이미 사업이 망해서 그걸 새롭게 갈무리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사업 재편은 사실 그런 지금까지 당장 망할 염려가 없지만 장래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아 보여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업의 사업운명을 개편하려는 기업에 수행하는 게 사업재편 계획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선제적으로 장래에 그런 불확실성이나 여건 악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업이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결국 기업이 망하면 그게 다 사회적 비용이라서 그런 걸 사실 방지하고 그렇게 굉장히 효율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런 건 선제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업재편 계획이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규모가 많지 않는데 예전에 산자부 의뢰로 관련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 기업들 중에서 이런 계획을 참여를 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른 제조화학들과 제도적인 지원과 같이 결합이 되면 특히 우리나라 앞으로 그런 경기 추세가 과거랑 다르게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 그런 조세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24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0. 이게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기초한 기업 간의 협력 내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내지 효율적인 배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과 유사한 효과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면제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표 IV-12>의 계속

- 지금 중요한 게 기업들 입장에서 자기네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위기인 부분을 정리하거나, 사업 재편 계획이 다른 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보여요. 중요도에 있어서,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사업 재편에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4호가 「조특법」 제121조 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과세특례에 부과된 거잖아요. 양도차익이나 이런 걸 면제해 주거나 과세 차익을 이원화 해주는 거에 대한 부수적인 거라서 그 앞에 제도가 있는 한 이 면세 제도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사업 재편 계획, 아시다시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 사업 재편에 대한 것인데요, 사업재편,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 어떻게 평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한 법률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몰 폐지되는 것이 적당한 거 같고요. 일몰이라면 굳이 연장할 필요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건 아까 법인 격 말씀드린 논리성으로도 그렇고,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상에서 인정하는 사업재편 대상이나 구태여 반면에 혜택이 유지돼야 할 그런 신기술이나, 과잉공급이나 디지털 전환이나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타당성을 발견하기 힘든 거 같습니다. 그냥 부활의 필요성은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 제7호 8호 9호, 모두 부실 관련 조항이에요. 부실 정리를 위해서 계속 증권거래세 면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실관련해서는 다 나머지 다른 부실조항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실 정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실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실정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세지출이 좀 수반이 되어도 과급효과가, 조세지출의 과급효과가 부실정리로 인한 과급효과보다 작다고 보여 집니다. 조세지출보다 부실정리 효과가 사회경제적으로 과급효과가 크니까 부실의 경우에서 증권거래세 면제 부분을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7호, 8호, 9호, 19호까지 그런 내용이죠.
- 제21호는 이진 상품 조성을 위한 어떤 상품에 대한 조성을 위한 조항인데 이것이 증권 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일반 시장의 조성의 필요가 아니고 특정 상품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까지 이런 일일이 증권거래세 면제를 두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22호에서도 이진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차원에서 이 부분도 폐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정 항목에 보면 부실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많이 나와요. 따로도 나오고 같이도 나오는데 이걸 금융기관 차원에서 아무리 조합이라도 특수성을 시행령으로 정리하면 되지, 법에 이때 아이엠에프 때문에 농협 수협이 다 문제가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적고,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고 조항들을 줄여주고, 복잡한 걸 줄여주는 차원에서 부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통합하거나 들어내는 게 낫다고 봅니다.
- 금융기관들의 그런 구조조정 관련해서 당연히 그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증권거래세 면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8호, 9호는 특히 예금

<표 IV-12>의 계속

보험공사가 그런 부실금융기관 정리 업무 수행할 때 지금 당연히 증권거래세는 면제가 되고 있는데 예보가 정부가 100% 출자한 특수 법인이고. 예보가 직접 그런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예보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해서 정리금융회사가 사실 실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자회사는 법인세 법 상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인 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게 아니라 법인세 관련 내용인데.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점이 있어서 그런 게 계속 지적이 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 하면서 내용에 포함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요. 제21호는 이 티에프는 주권양도 해서 증권거래세 면제 하는 건 당연히 다른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랑 하고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당연히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라.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 「상법」·「자본시장법」·「법인세법」 정합성 정비 필요
 - 사업 연속성 요건 중 합병법인의 요건, 합병법인의 주식 평가 방법 등이 각 법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존재하여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게 손질될 필요

- 적격·비적격 합병 간 세부담 차이 검토 필요
 - 적격·비적격 여부에 따라 과세이연요건에 차이가 있으나, 세부담 차이는 크지 않음에 따라 충분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몰 규정 보다 상시규정화 필요
 - 또한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편의성을 제고 할 필요

- 「법인세법」에 규정된 적격합병 요건의 적절성 검토
 - 규정 신설 시점과 현재 시점의 경제상황과 기업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최근 환경에 부합하게 적격 요건이 정의되었는지 검토할 필요

<표 IV-13>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관련 인터뷰 내용

- 「조특법」 이외에 법인세법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세 이연.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합병 등 과세 이연에 적격 요건. 예컨대 사업목적 요건 사업 연속성 요건 사업 계속 요건. 이런 걸 포함해서 적격요건에 대한 다시 한 번 정비기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아울러 사후관리. 유지요건의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나 하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과 법인세법 간의 정합성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이런 적격요건을 요구하는 것들이, 예컨대 하나 예를 들면 사업 연속성 요건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주식이액이 100분의 80.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승계를 합병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요건이. 합병법인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을 80% 이상 받아야 하는데 상법에서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로 대가. 대가 부분을 완전히 풀어 놔어요. 현금 합병이 가능하게 풀어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80%로 묶어 놓고 있는 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과 법인세법과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 사업목적 요건에 있어서도 일단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이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사업 계속성 요건도 합병 등기를 계속하는 사업 년도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이제 사업등기 일이 사업연도 막바지에 있으면 몇일 안 되잖아요. 이런 요건들이 현실성 있는 요건들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과세이연 등에 과세 특례를 좀 더 제대로 주려면 이런 적격요건 사후관리 내지 유지요건과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말씀드린 상법 자본시장법과의 정합성. 그리고 또한 측면은 현실성과 효과성 부분에서 한 번 전반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주식. 기업 구조조정에서 제일 중요한 합병 등에서 포인트가 주식의 가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합병 비율 등 비율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 합병 주식평가 관련해서 상법, 자본시장법, 조세법과는 잘 아시다시피 각각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에게는 상당히 중복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자본시장법, 조세법 간에서 가능한 범위까지는 서로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합성 제고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식평가 관련해서 그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은 세법에 꼭 그렇게 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주식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결국 과세관청과 충돌이 발생해서 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판례나 그런 경향을 보면 꼭 그런 사법부에서도 세법 규정에 따른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 방법이 더 손을 많이 들어주는 추세라서 그런 면에서 고무적인 면이 있지만 기본적인 근거 법령의 차이가 있어서 좁혀질 수 없는 차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른 법령과 관계나 경제 회생을 반영해서 과세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세 이연 요건에 충족 여부에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 비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비적격분할을 구분해서 과세이연 요건에 차이가 발생하고 세금 부담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세액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적격합병, 분할과 비적격합병, 분할 간에 세금 부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과세 이연이라서 기간 이자 정도의 효과 밖에

<표 IV-13>의 계속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서. 물론 증권거래세랑 연결 돼서 그거까지 고려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열심히 과세이 연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실제 보면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충분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사업 재편 계획은 「조특법」에 따로 절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장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대한 건 기업구조조정 쪽에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좀 보기 쉽게 사업 재편을 따로 뺀 것처럼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른 조세 특례도 다른 장으로 빼서 하는 게 법적 체계 쪽에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업 재편은 둘째 치고 재무구조 개선 쪽은 상시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너무 일몰을 계속 이야기하기보다 상시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법이 규정한 적격 합병 요건은 1.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2. 80% 이상 주식을 두고 가서 배정하고 보유할 것 3. 승계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예전에는 충분한 요건으로 보였을 수 있겠죠. 요즘은 워낙 변동이 빠르고, 에코프로도 갑자기 100만원이 가고 사업 재편의 유형이 산업계 상황. 산업계 상황이 기업활력 특별법에서 의도하는 재편이 애매하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그게 진짜 신기술이고 진짜 과잉이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한국을 마치 기동성 있게 움직여 보자 이런 의도를 법의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 같은데 갑자기 그런 게 등장한 걸 보니까 그런 생활에 이런 법률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상황에 발 맞춰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유형도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 있어서 그런 증권거래세 감면도 좀 더 아까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의견을 드린 거지만 원론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맨 처음에 전지했던 목적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현란한 말씀씨를 보이면서 설명했지만 결국 세수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거라고 추측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결국 조세저항이 적은 게 간접세니까 조세저항이 적은 쪽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그것이 진정한 의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그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문포 정도 던지고 싶습니다.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4. 실무자 인터뷰 결과

인터뷰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함

가.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 요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

기업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 경영 효율화, 외부적 제도 변화, IPO 등
- 2세 승계 등 경영권 관련 이슈, 신사업 등이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구조조정 시 자본 조달 문제가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함
- 경영 상황, 신사업, 경영 효율화, 재무구조 개선, 경영 승계 등이 목적 또는 중요 요인이며 자금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나 세금 부담도 고려 요인임
- 구조조정 이후의 현금흐름이나 수익성 확보가 고려되며 기타 합병의 시너지 효과, 관계 법령의 적합성 등도 중요한 고려 대상
 - 지배구조 강화, 승계 등 경영권 관련 구조조정도 다수 존재

□ 종합하면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은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IV-14> 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 요인 관련 인터뷰 내용

-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은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고, 의사결정 일어나고 나서 나쁘냐 아니냐를 보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 효율화도 있고 제도가 바뀌었거나 하면 할 수 있고, 지배 구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또 사업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가 계속 바뀔 수 있어서 지배구조를 계속 바꿔야 하고 그에 맞춰서 합병하고 인수도 하고 분할도 해야 하는데 그걸 사실 의사결정을 가장 많이 받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손익이나 생각했던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랑 외부적으로 제재 받았을 때 외부적으로 규제를 받았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리고 PE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2018 2019 2017 이때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금 유치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자금 유치를 하면서 회사 오너들 입장에서 액션을 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식으로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사모펀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그런 식으로 그쪽과 아이피오를 타 갖기로 하면 그런 식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죠. 올해는 줄었고 작년 말에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 괜찮았고. 계속 해서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에 천억 이상이나 이하냐에 따라서 상장사는 내부 회계 감사나 검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큰 회사는 전혀 의사결정이 중요하지 않는데 작은 회사. 천억 안 되는 회사는 자회사로 일부 넘기거나 해서 조정해서 외부 감사를 피하는 경우가 있었고. 내부 통제 쪽으로. 공사가 작년에 천억이었고 그 전에도 규모 별로 조금씩 도입이 되면서 내부 통제 중에서 복잡한 부분. 오퍼레이션 복잡한 부분을 자회사로 넘기거나. 분할해서 밀로 빼거나. 아이피오도 마찬가지로. 무적분할. 인적분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느낀 건 22년까지 아이피오 열풍이 불어서 그거 준비하면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이 회사가 아이피오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계속 해서 밟는 건데 조금 이익이 덜 남는 사업부는 다른 데로 넘기고 될 만한 사업부는. 왜냐하면 보통 회사가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주로 여러 개 기업을 가진 관계사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에게

<표 IV-14>의 계속

알려지지 않은 기업도 20개 30개 10개. 기업집단에 분류가 되지 않은 기업들도 그렇게 회사가 관계 회사랑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가 꽤 있었어요. 그런 목적성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너 회사들의 구조조정 요인이 큰 거 같아요. 그 회사들이 2세 승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업을 어떻게 나눠서 승계하는 게 적절한 건지 관심 많은 거 같고. 새로운 신사업 하려는 회사는 구조조정이랄지 모르겠는데 합병이나 분할을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합병 분할로 신사업 진출을 하려고 하니깐. 신사업이나 사업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쓰려는 거 같아서. 회사의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일 거 같아요.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오너회사 2세 승계 문제인데 2세 승계를 하려면 대부분 주식회사니까 그 회사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회사가 얼마인지 중요하면 결국 싸게 넘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싸다고 하면 좋으면 오히려 부담스런 상황이 역설적으로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게 컸고요. 오너회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사업 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좀 자본시장 상황이 크게 고려가 된 거 같아요.

- 제가 업무에서 경험상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주로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신사업 진출하거나 경영 효율화로 중복 개선 효율 증대 할 때, 기업들 서로 지분 정리 하는 거 같고. 경쟁력 확보다 재무구조 개선. 경영승계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요인이 조정할 때 많이 고려하는 것들일 거 같아요.

저희가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주로 저희는 회계사들이니까 회계 세무 쪽으로 보고. 변호사는 같이 하면 법률 쪽을 하는데 자금이 얼마나 소요될 거냐. 세금이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법률 적으로 가능한 거냐. 장애 요인이 없냐. 효과를 보겠죠. 주로 보는 건 세금을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느 세금 어느 세금 암 별로 할 때 이게 얼마. 분석해 보면 세금부담 자금부담 법률 적 장애를 고려하겠죠.

-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주된 문제는 결국 향후 수익성이 어떻게 될 거냐. 현금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지배구조도 바꾸고. 임원도 감축하고 사업부도 조정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주로 고려하는 건 향후에 어떤 현금 흐름과 수익성이 날 거냐. 이게 고려 대상일 거고요. 그 외에도 합병은 합병해서 시너지가 나느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지주회사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자회사 일정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런 요건을 갖추는 틀로 합병이 유용하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한계기업이 있는데 청산할 거냐 합병할 거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청산해서 회사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안아서 조용하게 흡수하는 형태의 의사결정도 있었고요. 향후에 상속하는 데에 자녀가 여럿이면 어디로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런 문제에서 회사를 쪼개서 나눠주는 방식. 쪼개면 가벼워지잖아요. 덩치가 가벼워지면 증여 할 때 작아지거나 주식을 증여할 때 플렉서블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분할은 고려하고요. 전체적으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지주회사도 결국 대주주가 지배 지분을 많이 갖고 가져가는 형태로 종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방편으로도 이용이 되더라. 이게 제가 직접 간접 경험한 것입니다.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업, 규모가 큰 기업, 자산 중 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 활동 및 구조조정 중 발생하는 주식 교환 상황에서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며, 「조특법」의 요건을 맞추는 것이 「법인세법」의 면세 요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사후관리는 중요하나 증권거래세 면제 자체에 대한 중요성은 높지 않음
 - 법에 명시된 취득세, 세금감면 및 규제사항들은 중요하며, 증권거래세 면제는 제조업보다 금융업이나 규모가 큰 기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됨
 - 세무 분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증권거래세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주식이 많은 기업은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음
 - 증권거래세는 자본이득에 비해 규모가 작아 상대적 중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합병이나 분할보다는 주식을 교환하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표 IV-15〉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특별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 기업 구조조정 목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처럼 내부 환경 외부 제재 여러 가지 자기네의 목표로 하는 꼴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요. 컨설팅비도 들고. 그 다음에 「세법」상 접근했을 때는 이게 증권거래세니까 증권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도 대주주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대주주랑 연결이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25%. 20-23%가 되지만. 최대 세율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양도세가 중요하고. 양도세가 중요해서 양도세를 절세하려고 방안을 세우고. 주식 양도세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면 「조특법」. 사례로 보여드린 제1항 제14호는 법인세 규정이란 일관성이 있어요. 법인세에서 면세 요건이 적용 요건이 적용분할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같이 따라 와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조세 쪽이 만약에 조세 쪽을 의사결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증권거래세는 일단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세무 전략을 짤 때 적합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사후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3년간 유지해야 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지, 증권거래세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해당사항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니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거래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 디테일하게 컨설팅하면서 자세하게 보면서 「조특법」도 검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덜 규모가 조단위가 아니잖아요. 500억 천억 수준에서 볼 때는 증권거래세까지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지 않고 말씀드린 현물투자 물적분할은 법인세과 일관성 있게 따라 오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금융지주회사. 이게 일몰조항에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금융지주 회사가 많이 생겨서 지금 일몰해도 크게 상관없을 거 같은데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한다. 이걸 진짜 구조조정 때문에 하는 건데. 기업 지배구조를 변경할 목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금액이 큰 딜이잖아요. 주인도 똑같고 영업구조도 똑같고 지배구조만 변경하는 거고. 최근에 이에스지 열풍이 불면서 지배구조를 더욱 더

<표 IV-15>의 계속

투명하고 더 효율성 있는 지배구조를 모든 회사들이 강화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금융기관 쪽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은 금액적으로 0.5%씩.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걸 남부 하는 자체가 꽤 부담일 수 있을 거 같아요.

- 일단 중요하죠. 조세특례 제한이 각 개별 법령에서. 일반적인 합병을 많이 했으니까 합병을 사례로 보면, 법인세법에서 합병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나 기타 세금 감면이나 기타 규제사항이 더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거래비용의 일종이라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서.

제117조의 중요성은 업종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많아서 제조업은 주식이라고 해도 할 게 얼마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금융업을 안 해봤지만 금융업은 지주회사 한다고 하고. 좀 지분 주식이 많이 들고 있을 테니까 거긴 상대적으로 중요할 거 같아요.

- 조세감면 되는 금액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구조조정을 하면 반드시 검토하는 게 세무분야에서 중요한 검토. 세무분야에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지방세에 더해서 증권거래세도 하나니까. 「조특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산. 부동산이 많은 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취득세 감면이 중요할 거고요.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그 경우는 증권거래세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겠죠. 증권거래세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은 적지만 그 당시에 중요한 하나죠.

- 세액 규모가 어느 정도냐.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액의 규모가 얼마냐가 중요성에 직접적 일 거고.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 거래이나. 그게 두 번째 요소일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구조조정 분할 합병 쪽에서는 주된 포커스는 그 간의 쌓아 온 캐피탈 게인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세가 되느냐. 그게 분할 당사자 법인도 있지만 주주 단에서도 생기는 문제니까요. 그거가 가장 주된 요인인 거 같고요. 상대적으로 증권거래세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에 대한 감면 규정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가 되더라. 라는 게 제 일반적인 감이고요. 어쨌든 구조조정 하면서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건 싫거든요.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가 중요하고 그거보다 증권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건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일 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합병에서 합병의 거래에서 어디가 감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포인트냐 라는 게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이해하고 계세요. 국세청도 나름 해석에서 정돈이 되어 있고요. 피합병법인이 가진 주식이 합병 법인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가 이 「조특법」 규정인 것이고.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가진 주식이 없어지는 거래에 대한 면제 규정은 아니에요. 그건 원래 면제였을 거예요. 주식이 없어지는 거래라서. 이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요즘에 정립이 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합병이나 분할은 그 사업부 안에 내가 가진 주식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제기가 돼요. 주식 없이 일반 사업부분만 가져간다면 이 증권거래세 문제에서 공여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을 자체를 교환하면서 증권거래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합병 분할보다는 좀 더 증권거래세의 중요성. 면제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 최근 구조조정의 경향성 및 특징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됨
 - ESG 경영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슈들을 고려하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배구조의 투명화 및 경영 효율성에 대한 기업의 욕구가 높아질 수 있음
 -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사업을 위한 구조조정은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짐
 - 경기 둔화로 인해 파산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산 중 부동산에 비해 지적재산권 등 다른 유형의 중요성이 높아짐
 - 기업 내부적인 구조조정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은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됨
 - 금융기관 지주회사와 같이 규모가 큰 구조조정 시 증권거래세의 부담은 상당할 수 있음
 - 합병·분할 시 거래비용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질 것 같으며, 절대 규모는 작지만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인센티브로서의 인식이 존재
 - 현물 출자와 관련된 구조조정은 법인세, 양도소득세로 이어지는 구조조정 방법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식으로만 구성된 사업부문 또한 적격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근 변하고 있음에 따라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은 커질 수 있음

<표 IV-16> 향후 구조조정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대상 「조세특별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
- 증권거래세는 면제 조항이 더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 더 좋겠죠. 이게 증권거래세만 특이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다른 세제랑 같이 일관성 있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쪽에서 만약 세제 혜택을 주면 증권거래세도 같이 개정이 돼서 같이 가는.
 - 요즘에는 구조조정을 많이 안 하려는 추세인 거 같아요. 특징이랄지 모르겠지만. 이거. 특징. 제가 몇 건 하려다 좀 었어진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좀 시장상황이 괜찮았어요. 자금 조달도 용이한데 경기가 다 안 좋다고 보는 거 같아요. 신사업 하려고 구조조정 하려는 건 많이 유보하는 거 같아요.
증권거래세 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중요하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거래 비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 합병이 여러 수단이 있지만 거래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요인이 크거든요. 증권거래세를 얼마. 다른 데에 크게 과세가 되는
-

<표 IV-16>의 계속

부분이 많이 있지만. 증권거래제도 기업 입장에서 절대적인 금액이 작은 건 아니니까. 하나의 고려요인이 되시겠죠. 그거 때문에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안 하는 거 아니겠지 만 좀 더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일단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너지를 기대하는 게 큰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경영을 해 오라 라는 측면이 크면 다 비용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 내자는 목적이 강하 시잖아요. 지금처럼 과거에 비해서 안 좋으면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아요. 만약 구조조정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로 일종의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거래비용 측면에서 좀 더 좋은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배구조가 지주회사에 가까 울수록 요인이 클 거 같아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요인이 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증권거래세가 주식에 대한 거래. 우습게 말하면 통행세잖아요. 그러 면 사실 일반적인 제조회사. 자동차회사는 사실 수직계열화 돼서 한 회사가 들고 있는 주식 자체는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절대적인 거래금액은 적을 건데, 요새 금융회사 지주회사 안 만들어서 모르겠지만 엘지나 신한금융 이런 회사는 주식을 통해서 지배구 조를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자체가 커지겠죠.

- 최근의 문헌을 찾아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기업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구제금융이나 재정지원을 하고 금리도 낮았고 유동성 공급 증가도 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도 파산이나 어카웃이 많이 줄었나 봐요. 그러다 그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정부의 역량도 없어서 통화 긴축하고. 이러면서 금리도 올려야 하고 물 가도 올려야 하고 공급망도. 코로나 때보다 파산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많이 늘어 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고. 예전보다 최근 기업이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자산이 중요한 자산이 되다 보니까. 지적재산권 자체만으로는 옛날의 부동산을 가지고 구조조정 할 때보다 모양새가 틀려지겠죠.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런 구조조정은 법인세 양도소득세로 이어지는 구조조정 방법이 돼서 활용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 중요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분 투자를 통한 정리를 추구하는 조항이라서. 그쪽으로 앞으로 더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기업에서 물어보는 이런 구조조정 관련해서 물어보면 검토하는 게 합병으로 같거나 현물 투자 할 거냐 이런 걸 검토하는 데에 합병 자체가 비용이 안 드는 합병을 많이 고려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어요.
-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들어온 후에 합병이 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사업 부분이 다각화되고 새로운 신사업 을 진출하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자체에서 할 거냐 엘지처럼 분할해서 물적분할 을 회사에서 흡수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의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이할 만한 세법 제정은 법인세법에 보면 그 적격분할 이런 요 건 중에 하나가 주식 사업. 주식으로 구성된 사업은 사업 부분이 아니다 라는 규정이 들어 있으면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이 이전될 때 수반되는 거라서. 그 규정이 들어가면 주식사업 부분을 분할 해 낼 수 없어서. 이 규정의 중요성이 떨어져요. 어제 살펴보니깐 2021년 요건이 삭제된 거 같아요. 주식사업부분도 허용하려는 경향으로 세제가 바뀐 거 같고. 그런 면에서 이 중요성은 너무 증가되면서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에 대한 견해

- 인터뷰 대상자들은 제14호가 구조조정 행위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 크기는 작으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
 - 규모가 큰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적인 금액이 낮음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자체가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크지는 않으나 효과성 자체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차익 문제가 중요하며, 증권거래세는 결정적인 중요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제14호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전원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거래세 자체가 효율성을 저해하며, 주주가 동일하고 주식만 변경하는 구조조정 상황을 고려하면 증권거래세 납부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적격 합병이나 구조조정은 기업의 본질적 실체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를 고려했을 때 증권거래세의 존재하는 시장을 왜곡하는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
 - 기업들의 구조조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미 존재하는 동법을 없앨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구조조정에 따라 기업의 실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며, 자금의 수요가 많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업 지원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표 IV-17>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 관련 인터뷰 내용

-
- 구조조정 하는 데에서 증권거래세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증권거래세보다 훨씬 더 큰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라서. 이게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고 보이지 않아요. 저희는 보통 컨설팅을 돈을 받고 시작하지, 공짜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회사가 필요하니까 저희는 투입이 돼서 증권거래세 보다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우리는 비싼 비용을 들이고 고용해서 어드바이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인하우스에서는 여러 가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회사 측면에서. 제가 회사 담당자로 있으니까. 그런데 증권거래세. 이게 상장사는 대리인 리스크가 있어요. 대리인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상장사 대주주인데 이미 상장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쓴다는 거고. 그거 자체가 본인 비용이 아니라 회사 비용이고. 상장사는 이재용도

<표 IV-17>의 계속

마찬가지지만 지분율이 굉장히 작은 지분율을 가지고, 회사를 굴리고 있던 말이에요. 이 비용들이 크게 안 보이는데 진짜 작은 회사 개인 회사라면 대리인 비용이 많이 없잖아요.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클라이언트를 겪어 보면 그럴 때는 작은 금액도 굉장히 민감해요. 증권거래세가 천억 대면, 예전 같으면 5억이면 고려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분들은. 그 분들이 인하우스에서 결정할 때 고려할 거 같은데 지금 지배 구조상 이미 상장사는 정말 개인 지분이 작고요. 대주주가 의사 결정할 때 조금 갖고 있고. 큰 회사들이 쓰는 비용이 어마무시한데 거기에 비해서.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의사결정에서 그런 데는 증권거래세가 크게 고려가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증권거래세 면제 유지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은 실무를 겪으면서 이야기하기보다 이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나올 거 같아요. 거래세가 효율적 자본시장에 방해 되는 요소가 맞잖아요. 원래 다른 나라도 일본 미국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했는데 면제가 되고. 세수가 없으면 새로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저도 상장사 주식을 조금 갖고 있고. 그거에 조금씩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없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에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이랑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이유가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거래세. 당연히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업의 계속 성, 주주도 동일하고 단순히 주식 변경만 하는 건데 최대한 안 하는 게 효율적이고 맞겠죠. 정책 기조는 계속 면제 하는 게 맞고 심지어 저는 확대 하는 것도 맞고 아예 없애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 결론은 혜택을 유지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세법에서 합병이나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일 텐데, 결국 기업의 실체는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기업의 실체를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보는 개념이거든요. 꾸준히 회사를 사고파는 개념이 아니라 두 집 살림이 한 집 살림이 돼서 동일한 실체를 갖고 간다고 하는 건데, 결국 그건 기업에 대해서 실질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래비용을 지금 부가하는 거잖아요. 경제학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 자체가 조세 재정이란 목적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코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크지 않지만 구조조정 하는 데는 한 푼이 아까운 상황에 있어서 물론 법인세 양도소득세나 매이저 세금보다 금액은 적지만 증권거래세도 중요한 검토 대상 중 하나죠. 효과는 없지 않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 하는 게 좋겠죠. 굳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나중에 없애면 돼지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추가하는 건 또 다른 노력이나 절차가 필요할 거니까. 기업들이 이런 조항이 있으면 구조조정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 구조조정에서 기본적인 핵심은 그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세액 규모에서 아까 어쩔 때 200억 많으면 1,600억 된 거 같은데 기업 하나가 양도차익으로 내는 세금이 몇 백 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규모가 한 회사 규모에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무시할 건 아니겠죠. 그리고 구조조정 세제가 어쨌든 사업하는 형태만 바꾸는 걸 전제로 이 적격분할 적격합병 요건을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실 주식의 이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야 하는. 형식만 바꾼 거잖아요. 면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야 의사결정을 하기 수월하고요. 구조조정하는 거 자체가

<표 IV-17>의 계속

뭔가 돈이 많이 나갈 일들이 아니면 돈의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앞으로 끊길 건데 그쪽에서 일부 바뀐다고 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상대적으로 의사 결정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해볼 수 있는 규모 세액이에요. 아주 크리티컬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규정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두 기업이 합쳐서 하나로 하거나 한 기업이 두 개로 나뉘거나 형태만 바뀐 거예요. 주식이 당사자가 바뀌거나 이전을 한 거래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면제 조항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다.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3, 24호에 대한 견해

- 제16호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전원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금융기관은 거래량이 많음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효과가 크며, 향후 지주회사 설립을 계획하는 금융기관이 있고 향후 인터넷 금융사 발달을 예상해 볼 때 계속 유지될 필요
 - 금융지주화가 대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적인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원론적 측면에서 유지가 필요함
 - 향후 많이 이용될 것 같은 조항은 아니지만 이미 존재하는 조항을 폐지할 필요는 없음
 - 수요는 감소한 추세이나 폐지할 필요 없음

- 제23호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중 2명은 유지 필요, 2명은 폐지 검토 의견을 제시
 - (유지 필요) 어려운 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 (유지 필요) 부실기업에 대해 사모PF를 만들어 투자하려는 상황에 대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PF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추후 수익 실현 시 발생할 비용을 고려하게 되고 향후 사용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지가 필요함
 - (폐지) 통상적으로 투자 시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폐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 조항과는 상이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면

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제24호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전원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사업재편 시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구조조정과 같은 상황이고 효과도 유사할 것임에 따라 일관성 있게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제24호 또한 어려운 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사업재편 등으로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목적성을 고려할 때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재편은 자의적인 행태라기보다 금융기관 등 타 기관의 요청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면제 유지가 적절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기타 조항에 대해 대체로 면제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제7, 8, 9, 19호 등은 양도자가 규제기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했고, 계속 유지를 위해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면제 유지가 필요
 - 정책 목적을 고려했을 때 면제 유지가 적절함
 - 많은 조항들은 특정한 섹터 또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으로, 각 조항이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으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준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면제 유지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단, 제7호와 제22호에 대해서는 재고 의견도 존재
 - 제7호는 부실 조합의 공공성을 고려한 증권거래세 면제인데, 내용은 영리법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22호는 농협의 사업지주·금융지주 개편이 완료되었음에 따라 존재 의미가 있는지 의문

(제16호)

- 증권거래세 면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요. 금융회사는 시총도 크니까 그거만큼 트랜지션 볼륨 자체. 거래 자체가 크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몰이 올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미 많이 지주회사로 대전이 된 걸로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대구은행도 시중은행화 한다고 하고 인터넷 은행도 생기면 앞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중요한 조문인데요,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금융지주회사가 더 생길 거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할 만한 금융회사는 다 지주회사로 다 재편이 된 거 같거든요.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조항은 앞으로 크게 많이 쓰이는 조항일 거 같지 않아요. 금융기관 지주회사에서. 그러나 기왕 만들 때는 다른 조항과 같이 해서 일관성 있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을 거니까 굳이 있는 조항을 없앨 필요는. 다른 목표로 어떤 기업이 다른 이런 지주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근간이 나올지 모르지만 한다면 그때 이게 없어진다면 조금 더 코스트가. 지주회사를 만드는 게 주식을 양도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온전히 모양만 바꾸는 걸 텐데 불필요한 비용을 소요할 필요가 없을 거 같거든요. 비록 지금 건이 많을 거 같지 않지만 그래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결국 금융지주 회사가 이런 구조조정 세제 하에서 세워질 거냐의 문제랑 연관되어 있는 거 같아요. 금융지주 회사 말고 일반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미 많이 세워져서 이런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지주회사를 앞으로 세우고자 하는 회사들이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그것도 형태 바뀌어잖아요.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문제라면 사후와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떨겠냐. 수요가 줄어든 건 맞지만 굳이 폐지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23호)

- 보통 이런 부실기업들은 주식의 가치가 없죠. 처음에 들어가서 그걸 갖고 엑시트 할 때 그걸 증권거래세를 면제 한다. 그걸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했어요. 에스피씨가 됐건 내가 직접 했건. 그리고 나서 양도 한다. 애는 왜 면제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희생에 들어가는 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한 거고. 그게 만약에 엑시트 해서 나간다. 양도해서 나간다. 양도 한다는 건 엑시트 하는 거잖아요. 애는 따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희가 희생을 해보면. 그게 보시면 하려는 기업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려는 기업에. 하려는 기업에 제가 투자한 거예요. 희생인데. 다 망가졌어요. 희생이에요. 내가 투자를 했어요. 애를 갖고 나중에 양도할 때. 원래 증권거래세는 양도하는 사람이 내잖아요. 양도할 때 과세 의무가 도래되고.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취득세가 있어요. 증권거래세도 주식에 대해서 취득세 하듯이 거래세를 내는데 애는 경매를 싸게 샀어요. 나중에 비싸게 팔 때, 매각할 때 그때 트랜짓 코스트를 안 낸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저걸 직접 대응을 안 해봤는데 이들이 투자할 때 각종 특혜를 주는 게 좋은데 엑시트 할 때는 왜 그렇게 하느냐. 저희가 희생이나 부실징후 기업에 투자하는 건 봤어요. 부실이

<표 IV-18>의 계속

많아. 그런데 그 중에 알갱이들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지 않거든요. 보통 완전 회사 망가지고 상폐가 됐어. 거기가 저가평가 할 때 뭔가 있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엑시트 하는데 왜 여기에 특혜를 주는지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 조항을 제가 적용해 본 건 없고 이 문구를 읽어 볼 때 투자할 때는 많은 회생기업은 많이 투자유치를 해야 하니까. 투자 유치할 때 많은 배네핏을 주는 건 맞아요. 그게 왜 엑시트 할 때 특혜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내가 경매로 경매 물건 싸게 샀어요. 애를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 돈 많이 벌어서 팔게 됐어요. 그 때 팔게 될 때, 부동산 팔게 되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거래 매각할 때 거래 수수료 측면에서 지원한다. 왜 생겼을까요? 그 과세 취지를 챙겨 봐야 할 거 같아요. 유치할 때는 효과가 있는 게 맞는데 저도 처음 봐서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보통 엑시트 하고 되게 이익 많이 나고 나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증권거래세 자체는 없어지는 것도 좋은데 애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면제를 유지하는 게 이 재무 구조 개선이나 회생절차 등에 대해서. 이걸 결국 어려운 회사가 어떻게 살려 보자는 얘기에서 나온 조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사들 한 푼 두 푼 아쉬운 회사들인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걸 조항 관련해서 법을 찾아 보니까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파산 신청 기업이나 채권 기한과 재무구조 개선을 약정을 체결한 기업. 법인 합병 전환 정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00을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사모 피에프를 만들어서 투자하려는 어떤 규정이다라고요. 이 조항은 피에프, 구조조정을 위해서 피에프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당연히 피에프 만드는 입장에서 엑시트를 생각할 텐데, 빠져 나갈 때 관련 비용들을 고려를 다 해 볼 텐데, 증권거래세를 굳이 내고 사모 투자 기구를 만들어서 그 목적을 마련하려는데 증권거래세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항이 오히려 일몰이지만 앞으로 금융기관 보다는 더 사용가능성이 높은 조항이 아닐까 싶어요. 이걸 존치 하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예요.
- 사모투자집합 기구가 어떻게 됐든 회생절차나 파산된 기업에 투자 기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같아요. 그걸 투자해서 차액 실현할 때 주식을 팔 텐데 그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거냐 감면해 줄 거냐 이슈인 거 같고.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투자수익을 얻는 양상을 보이잖아요. 앞의 건 실제 주식의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주가 바뀌지만 어쨌든 큰 주주가 밑에 다 있어요. 면해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납득이 가는데 이걸 사실 투자자의 의 사결정인데 부실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했고. 그러면 그런 목적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 될 이유가 있을까. 더군다나 증권거래세가 면해줄 이유가 많아지려면 투자 수익이 많아져야 하잖아요. 양도가액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성공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또 감해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걸 다른 거랑 다른 거 같아요.

(제24호)

- 주식 교환은 합병하냐 분할하냐 주식교환을 하나 주식교환은 옵션 중 하나예요.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는데 이 주식교환을 써서 바꾸거든요.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애를 만약에 최근에 주식교환 한 사례가. 작년 말에 주식교환 한 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배구조를

<표 IV-18>의 계속

바꾸고 싶은 거예요. 모 회사가 있고 중간에 자회사랑 밑에 손자회사가 있는데 애를 갖고 복권을 받고 싶을 때 쓰는 테크닉. 테크닉보다 방법이죠. 실제로 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주주가 똑같은데 주식을 이렇게 바꾸는 건데 애가 가진 다른 거랑 여기 가진 다른 거랑 바꾸는 건데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회사 대 회사면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문어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회사들이 대부분 한 사람이 100% 모회사 자회사 손주회사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자금이 그 때 탁탁 맞춰 들어가지 않아서. 같이 들어가요. 자기 종속회사가 같이 들어가거나 다른 데랑 같이 들어가건. 자금력이 없고 다 이사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 투자 결정이 일어나야 해서 일단 이렇게 됐고 사업 재편이 되면서 주식교환이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법인세나 법인세 적합 합병 요건에 맞으면 법인세가 면제가 되고 과세가 이행이 되고. 그리고 그 주주들이 갖고 있는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적격이면 면제가 되고 비적격이면 면제가 안 되고. 이 요건과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주식교환은 기업들이 지배구조들이 다 조금조금씩 지배를 하고 있는 구조도 많고. 아이피오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들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요새 주식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상장사 말고 비상장사들도 아이피 열풍이 불면서 지배구조가 본격화 되고 여러 이해관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유지하는 게 좋아 보여요.

- 사업재편구조. 그 이전에 말씀드린 23호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부식기업이나 과잉기업이란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과잉기업에 대해서 일종의 특례를 열어줘서 원활한 재편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증권거래제도 그런 취지에서 면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하고 그걸 목적으로 사업 재편에서 하는 건 살아나고 발전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을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사업재편 계획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업을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승인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금융기관의 통제 하에서 움직이고. 내가 어떤 수익 창출을 하려던 건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고. 이 부분은 면제 조항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아 생각하고 있어요. 자의적인 것보다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 나의 원래 의도한 방향만 가미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율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면해질 만하지 않나 싶어요.

(기타)

- 제7호를 보면 제가 얘기 드렸듯이 부실한 데를 인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정조치에 따라서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건데 다른 규제 기관이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양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비용을 내야 해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이것만 볼 때는요.

제8호, 9호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걸 아까 제가 얘기한 일몰조항이 있는 거랑 같네요. 회생기업이나 부실정후기업을 인수할 때 엑시트 할 때. 이걸 애도 보면 수행하기 위해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을 양도했다. 예금관리공사나

<표 IV-18>의 계속

자산관리 공사는 나라에 맡기는. 정부 정책에 맞게 이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랜지션 비용이라서 계속 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9호는 부실인데. 이것도 기금이잖아요. 기금이 정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양도했는데 그걸 또 트랜지션 코스트를 내는 건 정부기관은 결국 코스트 냈다가 다시 정부로 들어갔다 회수로 들어갔다 다시 지원을 받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다 면제로 진행 하는 게 효과적일 거 같아요.

21호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이 하잖아요. 코텍스. 코텍스 200 100 해서 각종 증권회사들이 이걸 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연금규모가 작다고 해서 연금을 퇴직도 연금으로 바뀌었죠. 퇴직금 일시불로 못 받았잖아요. 아이알피도 하고. 개들이 자기네 약관에 따라서 구성종목을 반영하고 있어서 계속 해서 증권을 트랜지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네는 당연히 면제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 오르겠지 하고. 그걸 또 투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금 하는 게 국가도 좋고 여기는 국민도 좋은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세금을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부가가 다시 된다. 이걸 아닌 거 같아요. 애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보죠. 유지 뿐 아니라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야 한다고 봐요. 22호는 면제 돼야 한다고. 딱 이 문구만 읽었을 때. 이 조항이 왜 생긴 지 모르겠는데 이 문구만 생겼을 때는 계속해서 면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산업은행에서 현물 투자 받은 주권이라고 하면 이 은행 자체는 국책은행이잖아요. 국책은행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회사가 산업은행은 당연히 대출을 해줬겠죠. 대출 해줬는데 그게 부도나거나 문제가 생기고. 회생에 들어가거나 해서 현물투자를 받았겠죠. 그걸 농협 금융지주회사라는 데에 넘기게 되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넘겼는데 그걸 다시 농협지주회사가 다시 그 자회사에 넘기는 거예요. 구조도 하나도 안 바뀌고 농협지주회사가 자기의 자회사한테 넘기는 부분이라서 취득 자체도 투자 목적도 아니었고. 산업은행이 농협금융지주로 넘기는 것도 당연히 투자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 때문에 받았을 거고. 그게 당연히 금융지주회사에서 자회사로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제가 있는 게 좋아 보여요. 금액이 클 거 같지 않는데. 산업은행이 대부분 들고 있잖아요. 굵직굵직 한 거. 옛날에 아이엠에프 때 쓰러진 거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면제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금액이 큰 게 이슈가 될 텐데.

- 우선 7호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부실조합은 무슨 땀땀 농협조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결국 느낌은 그 농협이 비영리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이런 규정을 해주는 거 같아요. 그런 회사가 실상을 돌아보면 영리법인이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개네가 어떤.. 결국 증권거래세는 국세이고. 그 국세로 인해서 결국 정부 살림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는 건 그 이상의 사회적인 효력이 있어서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사기업과 똑같은데 페이버를 준다고 해서 그 이상의 혜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항목들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보면 면제를 유지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 나머지 조항은 잘 쓰일 거 같지 않아요. 특정한 섹터나 리어에 목적을 둔 조항이라서. 굳이 이게 세금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쓰일 수 있을 거 같아서. 굳이 만들어 놓은 걸 없앨 필요는 없고 세수에 영향도 클 거 같지 않아서 존치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표 IV-18>의 계속

- 큰 그림만 말씀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세세하게 들어가져 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기업이 어쩔 수 없이 인수하는 주식도 있고. 채권 금융기관이 어쩔 수 없이 출자 전환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나의 의도와 반한다고 할까요? 공적인 의미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면제해줄 수 있는 요건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내 나의 투자 수익을 쫓아가는 거. 이진 굳이 면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구요. 그걸 관점으로 하나씩 맞춰보면 대부분 부실기업의 채권,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건 다 감면 대상으로 넣어도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단 기준을 그 정도로 해서 하나씩 맞춰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라.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 양도소득세 부담 및 간주취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개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법규의 정리가 필요함
 -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파편화되어 있음에 따라 통일 필요성이 있음
- 「법인세법」 적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
- 「세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
 - 조문의 해석이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많음에 따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외국법인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현행 「조특법」은 내국인 간 거래를 규정하는데, 최근 외국법인과의 인수합병이나 해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
 - 관련 연구 및 법제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표 IV-19>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관련 인터뷰 내용

- 일단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에 딸려 오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약간 올랐어요. 최대 주주랑.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들어가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법인세에 묻혀서 들어가는 거고. 개인이면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는데. 구조조정 활성화라고 하면 이익이 나고 이익이 나면 당연히 세금이 나오고. 애가 여러 회사가 있어서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파는 순간. 법인세로 다 과세가 되는데 법인세율이 떨어졌죠. 양도소득세보다 25%에서 20%. 사실 이걸 양도세를 없앤다. 그러면 법인세랑 형평성이 안 맞을 거 같고. 양도소득세율이 사실 최근에 올랐고 법인세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들이 부가되는 세금이라서. 그런데 법인세랑 비교해서 형평성에서 떨어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과세 구간이 200억까지 20.9%로 떨어졌으니까. 양도소득세를 그쪽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올렸고. 심지어 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3억이었나? 대주주 요건이 3억이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법인세는 너무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세제가 복잡해서 급하지 않게 복잡하니까.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말고 법인세로 들어가면, 과세 이연이 되는 부분이. 5년 과세 이연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세 이연보다 아예 면세로 좀 조금 거 이연 걸 촉진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과세 특례 요건을 더 확대 하고. 이연도 이연보다 면세.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법인세 이야기 하면 복잡하니까.

양도세가 줄면 부작용이 덜 하겠죠. 양도세가 있어서 개인들은 천억에 팔았어요. 천 억 짜리에요. 당장 양도세를 내야 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양도세 낸다고 생각하면. 그걸 사실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세금 내라고 하면 보통 현금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승계 해서 증여 하고. 요즘 기업승계 쪽이 좋아졌잖아요. 이연한다고 되어 있고. 왜냐하면 양도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현금 없는데. 이걸 20 몇 % 내면 거래 금액이 회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미들캡. 스톡캡도 200억 300억 500억인데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취득했을 때랑 처분했을 때랑 차이지만, 이 부분이 꽤 많이 나오고 그 위에 처분하는 데가 법인이 되면 법인세율이 떨어지면서 조금 내는 거예요. 법인인 경우에. 큰 데는 괜히 안 갖고 있고 중간에 에스피씨를 끼고 들고 있죠. 작은 데는 작다는 이유로 약간 세제 적으로 불합리하게 자기들은 고리의 양도소득세를 물고 있다고 보이는데. 또 워낙 우리나라가 주택 쪽은 더 양도소득세가 크니까.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게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것도 있어요. 감주취득세. 그게 감주취득세는 내가 50%를 갖고 있어요. 50%보다 덜 갖고 있으면 도는데 40%를 갖고 있다 60%로 느는 순간 그 밑의 회사가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이중과세예요. 그거. 감주취득세를 내냐 안 내냐. 50%를 넘냐 안 넘냐. 이거 때문에 세금을 당장 두 달 안에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항상 거기에서 중간에 걸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다 이미 취득세는 법인에서 냈는데 또 주주가 내는 부분이니까. 감면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자문하니까 좋은데. 그 정도. 양도소득세랑 감주취득세.
- 일단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되게 약간 각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법률이든 아니면 하나의 특별법을 만들거나. 그게 파편화가 된 걸 정리해서 하나의 법제 하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 같고요.

<표 IV-19>의 계속

사후관리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인 거 같아요. 이게 일단 법인세법에 적격. 합병으로 예를 들면, 합병은 적격 비적격 요건이 있고 적격이라고 해서 그냥 어? 그때 기준이 적격이라고 해서 그냥 그 이후로 적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에게 사후관리 요건을 줘서 일정기간 동안 피합병법인의 승계한 고용인원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피합병법인의 승계한 사업을 양도하지 말든지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구성을 유지하거나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취지는 이해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긴 게 아닌가. 2년 3년씩 기간을 두고 있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2년 3년이면 상황이 많이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혜택을 준다고 하면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유화적으로 적용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1번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또 1번 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존의 규정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 세법 관점에서 저희가 고객 의뢰 받아서 검토 하다 보면 세법이 급히 만들거나 이런 거 때문인지 조문 자체가 애매하고 해석이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과세 관청에 물어봐도 잘 모르고 해석이 안 되고. 세법을 말을 쉽게 쓰고. 좀 더 하는 게.
- 증권거래세 감면 제도가 어쨌든 내국 법인을 거래 중심으로 따져 있고 그게 당연히 맞을 텐데 요즘 기업들이 미국에도 많이 진출되어 있고.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있고 상장도 크로스 오더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외국 법인 간의 합병 문제도 있고요. 거기서도 한국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면해 줄 거냐 말 거냐 이슈가 있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으로 명확하게 몇 가지는 들어왔는데 현물출자 상장하는 건 들어온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스터디 대상이 돼야 하지 않나.
큰 틀에서 일관성 있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조세 정책이라는 게. 예컨대 시장이 너무 악화돼서 투자수익을 쫓는 자 조차도 일정 일몰 기간을 주고 감면해줄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급격한 변화는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료: 인터뷰 내용 일부 편집 후 정리

5. 효과성 분석 소결

-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구조조정에 미친 영향은 작은 편이나, 기업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기업의 자본조달 상황, 구조조정으로 인한 향후 수익성 문제 등이 구조조정 행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됨
 -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인 세부담을 고려하는 것

으로 파악되며, 절대적인 크기는 양도세 등 타 세목에 비해 작더라도 증권거래세 부담도 비용에 포함됨

- 증권거래세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 예를 들면 금융업, 대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대체로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동법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제14호의 경우 학계 4명, 실무자 4명 모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조세지출에 비해 바람직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 후생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제16호는 학계 2명, 실무자 4명, 제23호는 학계 2명, 실무자 2명, 제24호는 학계 2명, 실무자 4명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제23호의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고려하여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실무자들의 의견이 존재하였음

□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법의 정비, 적격 합병 요건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상법」·「자본시장법」·「법인세법」 등 법 간의 정합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적격’ 요건의 정의를 변화된 경제상황과 기업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 등을 비롯한 기업조직재편 및 부실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본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①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 양도의 경우
 - ②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④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경우

- 본 연구는 위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타당성 분석) 증권거래세는 효율성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투기성, 초단기성 거래에 대한 비용을 높여서 변동성을 줄인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더불어 과세편의성도 존재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사항

- (대상의 적절성) 그렇지만 기업 구조조정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장기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증권거래세의 주 과세목적인 투기 억제 및 변동성 감소와는 다른 종류의 경제효율성 개선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줄여 줄 필요가 존재
 - 국내 증권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구성 종목 변경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 또한 괴리율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며,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 지주회사 전환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구조조정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금융지주회사제도가 현재의 금융 환경변화를 다소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증권거래세 면제가 이들 별도 법령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은 아님
 - 다만 최근 교보생명의 금융지주전환 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가치 지배 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존재

- (내용과 방식의 적절성) 기업 구조조정 활동에 대한 과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외에도 「법인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관련 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의 변화에 맞춰 상호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 증권거래세 감면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과세감면들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해당 취지에 맞춰 보완하는 역할이며 실제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업 구조조정 활동에 따른 과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조세당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거나 「조특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를 제기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안은 조세당국의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협동에 따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효과성 분석) 효과성 분석의 방법론으로는 크게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실증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질적 분석의 두 가지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음
 - 실증분석은 실제 기업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활동에 「조세특례제한법」이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임
 - 질적 분석은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동 조항의 효과성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접근법임

-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건이 만족될 필요가 있으나, 본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 조건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정책 또는 제반 상황의 변화 등의 여건을 통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해야 함
 - 처치 및 통제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고, 시간에 따른 비교를 수행할 경우 시간에 따른 추세 변화와 「조세특례제한법」의 영향을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자료 구득이 가능한 기간 중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속하는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를 활용하여 적절한 실증분석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의 변화가 증권시장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짐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분석 결과 구조조정 활동과 연관된 거래의 절대다수는 장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본 평가는 통상적인 설문조사 방식 역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기업의 구조조정과 동법의 관련성에 대한 실무적, 학문적 이해가 필요하나, 표집 대상 모집단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표본 수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선행 평가인 김학수 외(2017) 또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바 있으나, 표본 조사 결과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명에 불과하였으며, 동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1명 중 3명에 불과하였음

- 이를 고려하여 본 평가는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효과성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전문가 인터뷰는 실무자 4명, 학계 4명으로 총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심층평가의 대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실무·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정하여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음

- 학계는 표적집단심층면접(FGI), 실무자는 심층면접(iDi) 형식으로 인터뷰 진행함
- 인터뷰는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
 - 제도 관련 현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재확인
 -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의견을 묻고,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14호를 중심으로 동 조항의 효과성 및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들인 제16, 23, 24호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청취 후 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심층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구조조정에 미친 영향은 작은 편이나, 기업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기업의 자본조달 상황, 구조조정으로 인한 향후 수익성 문제 등이 구조조정 행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됨
 -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인 세부담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절대적인 크기는 양도세 등 타 세목에 비해 작더라도 증권거래세 부담도 비용에 포함됨
 - 증권거래세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 예를 들면 금융업, 대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대체로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동법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제14호의 경우 학계 4명, 실무자 4명 모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조세지출에 비해 바람직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 후생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제16호는 학계 2명, 실무자 4명, 제23호는 학계 2명, 실무자 2명, 제24호는 학계 2명, 실무자 4명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제23호의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고려하여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실무자들의 의견이 존재하였음

-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법의 정비, 적격 합병 요건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상법」·「자본시장법」·「법인세법」 등 법 간의 정합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적격’ 요건의 정의를 변화된 경제상황과 기업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심층평가의 평가 대상인 「조특법」 제117조 각 항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구조조정 활동의 목적인 기업의 장기적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효율성 개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줄여 줄 필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기업 분할을 통한 지배권 강화와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상법」·「자본시장법」·「법인세법」 등 법 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17.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 11.
- _____,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0. 7.
-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2014.
- _____, 『조세지출보고서』, 2008~2009.
- _____, 『조세지출예산서』, 2010~2022.
- 김무열, 「독일의 자본자산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조세학술논집』, 제36권 제2호, 2020, pp. 195~227.
- 김은수, 「회사 분할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경영법학』, 제31권 제2호, 2021.
- 김종봉·윤태화,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 저널』, 제13권 제2호, 2012.
- 김준석, 「자사주 마법과 자사주의 본질」, 『자본시장포커스 2022-16』, 자본시장연구원, 2022.
- 김준석·황세운,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이슈&정책 2013-01』, 자본시장연구원, 2013.
- 김학수·성승제·김준식,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남길남, 「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상장 주요 이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 류호연·이수환,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방안」, 『NARS 현안분석』, 제25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 문성훈·박종상·정원석,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 세제분과, 2015.
- 박진우·이민교, 「중견기업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한국증권학회지』, 제48권 제1호, 2019, pp. 1~27.
- 송민경,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564호, 국

- 회입법조사처, 2019.
- 송은혜, 「물적분할 기업의 후속 지배구조 개편 현황 분석」, 『KCGS Report』, 제8권 제2호, 2018, pp. 4~9.
- 이상엽·이동규·김누리·배경훈·빈기범,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 이석영·유상열, 「회사분할을 이용한 지주회사 설립과 계열분리 - LG화학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회계연구』, 한국관리회계학회, 2004.
- 조성익·양용현, 「계열기업 간 출자에 있어 새로운 규율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7.
- 황남석,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조세법연구』, 제27권 제2호, 2021.
- 이관휘, 「대기업의 물적분할, ‘한국식 기업지배구조’ 때문이라고?」, 2021. 1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84>, 검색일자: 2023. 5. 16.
- _____, 「주주가 알아야 할 이사회의 진짜 역할」, 2022. 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16>, 검색일자: 2023. 5. 16.
- 『이코노미스트』, 「‘인적분할’로 노선 튼 기업들…물적분할과 뭐가 다르길래」, 2022,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209280061>, 검색일자: 2023. 2. 28.
- kotra 해외시장뉴스, 「벨기에, 외국인 투자 매력도 세계 1위」,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15281, 검색일자: 2023. 4. 23.
- Berger, P. and E. Ofek, “Diversification’s effect on firm valu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1), 1995, pp. 39~65.
- Bijlsma, M. and Zwart, G. T. J., “The changing landscape of financial market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ork. Paper, 2013, <http://bruegel.org/2013/03/the-changing-landscape-of-financial-markets-in-europe-the-united-states-and-japan/>.
- Brown, Dale, “A Securities Transaction Tax Will Hurt Advisors and Clients,” Oct. 4, 2012, <http://www.advisorone.com/2012/10/04/a-securities-transaction-tax-will-hurt-advisors-an>.
- Burch, T. R. and V. Nanda, “Divisional diversity and the conglomerate discou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0(1), 2003, pp. 69~98.

- David, Joel M., “The Aggregate Implication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88, 2021, pp. 1796~1830.
- De Young, Robert, Douglas D. Evanoff, and Philip Molyneux, “Mergers and Acquisi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A Review of the Post-2000 Literature,”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36, 2009, pp. 87~110.
- Desai, H. and P. Jain, “Firm performance and focus: Long-run stock market performance following spin-off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4(1), 1999, pp. 75~101,
- Goldberg, Michelle, “VII.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Should the Legislature Act as Robin Hood?,” *Rev. Banking & Fin. L.*, 2013, 32, pp. 297~565, <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dberg.pdf>.
- Gomber, Peter, Martin Haferkorn and Kai Zimmermann,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France: Impact on Market Quality and Inter-Market Price Coordination,” White Paper Series No. 11, Center of Excellence SAFE Sustainable Architecture for Finance in Europe, 2014.
- Habermeier, Karl and Andrei A. Kirilenko,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and Financial Markets,” *IMF Staff Papers*, vol. 50, 2003.
- Holmes, Frank, “Risk Of Going Hungary With A Financial Transaction Tax,” *Fobes*, 2012. 7. 29., <http://www.forbes.com/sites/greatspeculations/2012/09/27/risk-of-going-hungary-with-a-financialtransaction-tax/>.
- IRAS e-Tax Guid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2022.
- Kamepalli, Sai Krishna, Raghuram Rajan, and Luigi Zingales, “Kill zone. No. w2714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 Keightley, Mark P., “Financial Transactions Taxes: In Brie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078, Oct. 22, 2015, <https://fas.org/sgp/crs/misc/R42078.pdf>.
- Matheson, Thornton, “Taxing Financial Transactions: Issues and Evidence,” *IMF Working Papers*, 2011, <http://ssrn.com/abstract=1784582>.
- _____, “Security transaction taxes: issues and evidence,”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9(6), 2012, pp. 884~912.
- Prahalad, C. K. and G. Hamel,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68(3), 1990, pp. 79~91.

- Sanger, G. C., and J. J. McConnell, “Stock exchange listings, firm value, and security market efficiency: The impact of NASDAQ,”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21(1), 1986, pp. 1~25.
- Schiffbauer, Marc, Iulia Siedschlag, and Frances Ruane, “Do foreign mergers and acquisitions boost firm productivit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6, 2017, pp. 1124~1140.
- Schmitterer, Eric M., “Evidence in Opposition to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The Case of Japan,” George W. Bush Institute, 2012, http://gwbceneter.imgix.net/Resources/Evidence_in_Opposition_to_Securities_Transaction_Taxes_The_Case_of_Japan.pdf.
- Schwert, W. and P. J. Seguin,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An overview of costs, benefits and unresolved questions,” *Financial Analysts Journal*, 49, 1993.
- Siegel, Donald S. and Kenneth L. Simons, “Assessing the Effect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n Firm Performance, Plant Productivity, and Workers: New Evidence From Matched Employer-Employee Data,”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1, 2010, pp. 903~916.
- Šramko, Filip, “The Impact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Market Quality: Evidence from France and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Sciences*, V4(3), 2015.
- Tobin, James,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The Eastern Economic Journal*, 1978.

<웹사이트>

-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 대만 유사제도, <https://taxsummaries.pwc.com/taiwan/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 싱가포르 유사제도, <https://taxsummaries.pwc.com/singapore/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 이탈리아 유사제도, <https://taxsummaries.pwc.com/italy/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 프랑스 법령정보 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
- 프랑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bofip.impots.gouv.fr>

부 록



부 록



콘센서스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4F 04637

전화 070-7617-4557, 전자우편 hemy@naver.com

홈페이지 [www.consensussurvey.com\(preparing\)](http://www.consensussurvey.com(preparing))

QA 2023-06-041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한 Focus Group Interview』

질문 가이드라인

2023. 6.

* FGI 소개 및 Ice breaking (10분)

인사 및 FGI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좌담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실시하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한 Focus Group Interview’입니다. 저는 좌담회 진행을 맡은 000입니다.

본 좌담회는 기업 구조조정 및 세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관련 조세 정책 연구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본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그 외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좌담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녹취 고지 및 승인

선생님들의 의견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녹화/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내용을 기억하거나 기록할 수 없어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녹화 내용은 연구 분석용으로만 활용하며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설명

제가 각 주제별로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해 참여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하는 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평소 관련 연구 및 업무를 하시면서 생각하시거나 느끼셨던 대로 솔직하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이나 사례 등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원인 파악이나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이유나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에 다른 의견이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FGI는 약 100분 이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 확인 및 라포 형성

- 참석자 소속 기관, 부서 또는 주 업무, 직위, 성명, 해당 업무 총 경력 등
- 참석자 질의 확인

▶ 본 FGI 가이드라인은 실제 좌담회 현장 상황과 참석자들의 반응 및 상호 작용에 의해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I. 관련 자료 공유 및 인지 여부 확인 (15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 공유(「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1항 7호 등)〉

- 도입 배경
-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10개 유형)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분류
- 증권거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등

1. [관련 법 조항 인지 여부]

- 1-1. 지금 설명드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1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probing: rapport 형성 차원에서 관련 「조특법」 소개 및 인지 수준 공유

II. 기업 구조조정 시 고려 요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요성 (25분)

2. [구조조정 의사결정 중요 요인]

- 2-1. 산업과 경제 현장에서 다양한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여부와 구조조정 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 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2-2. 혹시 직·간접적으로 참여 또는 알고 계신 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 사례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인들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probing: 기업 구조조정 여부 또는 시기 의사결정 시 주요 고려 요인 파악

3. [구조조정 시 「조특법」 중요성]

- 3-1. 통상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진행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특법」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조특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반대로 별 고려 요소가 되지 않나요?

3-2. 「조특법」에는 다양한 조세특례 조항들이 있는데요, 기업 구조조정 시 앞서 설명드린 ‘증권거래세 면제’와 관련한 조항은 의사결정 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특법」에 규정된 여러 조항들과 비교 시 ‘증권거래세 면제’를 규정한 조항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비 중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probing: 기업 구조조정 시 「조특법 및 증권거래세 면제」(117조 14호 중심)의 중요성 파악

4. [향후 「조특법」 중요성]

4-1. 최근 기업 구조조정 실태의 경향이나 자산 소유구조 경향 등을 보았을 주요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 향후 기업 구조조정 경향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제117조 14호)의 중요성은 더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증가/감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probing: 향후 기업 구조조정 경향성 고려 시 증권거래세 면제(117조 14호 중심)의 중요성 예상

III.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14조) 평가 (20분)

5. [증권거래세 면제 효과성 평가]

5-1.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기업 구조조정 시 본 「조특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5-2. (효과있는 경우) 효과가 있거나 도움이 된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이나 구조조정 방식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 규모별 / 업종별 / 업력별 / 지배구조 형태별 / 구조조정 방식별 등

5-3. (효과가 없는 경우) 효과가 없거나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probing: 증권거래세 면제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 효과성 평가

6. [증권거래세 면제 유지에 대한 태도]

6-1.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은 조세 지출이 동반됩니다. 구조조정 활성화의 긍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면제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선이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6-2. (유지 찬성) 현재의 면제 조항들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3. (유지 반대) 현재의 면제 조항을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probing: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14호) 유지 여부 및 이유 파악

IV. 기타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평가 및 기타 사항 (30분)

7. [16호 면제에 대한 평가] <보기 제시>

7-1. 「조특법」 16호(금융기관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특법」 16호는 전반적인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중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7-2.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조특법」 16호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지 찬성/반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probing: 금융기관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면제 조항(14호) 효용성 및 유지 여부 파악

8. [23호 면제에 대한 평가] <보기 제시>

8-1. 「조특법」 23호(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 양도하는 경우 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특법」 23호는 전반적인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중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8-2.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조특법」 23호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지 찬성/반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probing: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양도 시 면제 조항(23호) 효용성 및 유지 여부 파악

9. [24호 면제에 대한 평가] <보기 제시>

8-1. 「조특법」 24호(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양도하는 경우 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특법」 24호는 전반적인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중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8-2.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조특법」 24호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지 찬성/반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probing: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 양도 시 면제 조항(24호) 효용성 및 유지 여부 파악

10. [이외 조항 면제에 대한 의견] <보기 제시>

10-1. 지금까지 평가해 주신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이외에도 다른 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6개 구분 - 7호, 8·9호, 19호, 21호, 22호)의 면제 조건 중 어떤 조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2. 각 면제 조항들 중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과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 조항이 있다면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 probing: 기타 면제 요건에 대한 중요성 및 유지 여부 파악

11.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및 조세 정책]

11-1. 지금까지 조특법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는 별도로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세제 개편이나 조세 정책 등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probing: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유의견

12. [추가 질문(필요 시)]

12-1. 좌담회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담회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연구진이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쭙고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 note: 추가 질문 list-up(1~2개 정도)

♣지금까지 좌담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